

감시 예방 카메라와 실종예방에 관한 법적 고찰*
 - 일본·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종자 찾기에 활용 가능성 검토-

Legal review of research surveillance and prevention cameras and disappearance prevention.

이 건 수**

Lee Keon-Su

《 목 차 》

- I. 서 설
- II. 지방도시에 감시·실종예방카메라 설치
- III. 영국의 감시·실종예방카메라
- IV.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과학기술 - 감시와 사회연대
- V. 마무리

[국 문 초 록]

┃투고일자: 2021년 11월 10일 ┃심사일자: 2021년 11월 24일 ┃게재확정: 2021년 11월 29일

* 본 연구는 2021년도 경찰청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사업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NRF-2018M3E3A1057443).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 범죄학박사.

본고에서는 현대사회가 잠재적 요인(범죄자)으로부터 방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감시카메라로 상호감시에 의해서 안전하고 안심인 사회를 확인하려고 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누구든 대략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전부 밝혀내고, 위험인자를 미리 제거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감시카메라나 건강검진은 그 전형이지만, 감시카메라라고 부르기보다는 실종예방 등 방법 카메라라고 부르고, 모니터라고 부른다. 오늘날, 범죄현상은 현실의 범죄발생 건수, 올바르게는 인지 건수에 관계없이, 특이한 사건을 계기로서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상이 퍼져, 범죄불안이 급속히 높아지는 모럴 패닉이라고 하는 상황 하에 있으며, 이것이 길거리, 점포, 주택, 주차장에서의 감시·실종예방 등 방법카메라 설치를 촉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CCTV는 누적된 공통의 준칙을 따르게 되는 법이 있었다. 이들은 1998년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 2000년 조사권한규정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정보보호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2012년 자유보호법이 새로 추가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에 관해서는 여기에 도로교통 관계의 규제 입법이 추가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감시카메라(시스템)에 대해 포괄적인 규제가 없었다. 1984년에 내무성 가이드라인의 도입으로 경찰이 이용하는 감시카메라 등의 감시활동용 장치의 가시화가 일정하게 도모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의 감시·실종예방 등 방법카메라의 시스템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규제도 강하게 기울기 이전의 선행연구가 있지만, 오늘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감시카메라의 홍수라고도 할 수 있는 가운데 감시카메라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 더욱이 2012년에는 자유보호법(Protection of Freedom Act)에 의해서 실무규범(Code of Practice 실무 준칙)이 제시되어, 새로이 감시카메라 커미셔너(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 SCC)가 배치되었다.

영국에서 본 것처럼 유비쿼터스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수집과 관리사회의 추이를 배경으로 하여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감시카메라 시스템이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영국에서는 모텔 감시카메라 준칙(실무규범)이라고 해야 할 것이 감시카메라의 범람, 증식 속에서 제기되어 주변 시민의 인권 관련 법의 정비 추이 속에서 성립되어 왔다. 감시(카메라 시스템)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명시되어 둘 필요가 있을가의 물음에 대해, 컨트롤(통제)이 사회적 규제에 필요 불가결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 같은 취지이며 지

당하다.

주제어

감시카메라, 실종예방, 개인정보, 초상권, 사생활보호, 공공장소.

I. 서 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감시(실종예방 등 방법) 카메라(시스템)가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자동차)도로 시설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공적조직체가 관리하는 도로, 시설(주변), 그리고 민간(사업자를 포함한다)·사인이 관리하는 점포·가옥, 시설, 장소(근무 구역을 포함한다)까지 그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카메라의 사용은 실종사건 등 범죄의 미연 방지와 재발 방지라고 하는 사회의 안전·안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선택이 강한 것이지만, 피사체를 특정해 파악하는 일반적인 감시의 단어가 카메라의 언어로서 사용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보안 카메라라는 말은 감시카메라의 유포미증적인 말이기도 하다. 카메라를 사용하는 측이 실종예방 등 방법카메라로서 표현하고 카메라의 객관적 기능, 효과,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면 방법기능에만 주목한 용어법은 이해의 용이성은 있다고 해도 피해야 할 것이다.¹⁾

본 논문은 일본의 지방도시 및 영국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감시카메라가 방법카메라로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경위 및 감시카메라의 경제면, 효과, 과

1) CCTV와 CCTV 용어법에 대해, 三上剛史, “社會の思考—リスクと監視と個人化,” (學文社, 2010年), 71-72頁. 본문 안에서의 감시(방법) 카메라, 감시카메라, 방법카메라의 3종류의 용법은 전 2자를 기본으로 하나, 기술 대상으로부터 사용 당사자, 특히 공적 기관이 사용하는 용어 ‘방법카메라’에 있어서는 이 장소에서의 전후 관계로부터 원문에 따른 ‘방법카메라’의 단어를 적절히 이용하도록 한다. 카메라는 자체가 녹화기능을 갖춘 완결형 카메라, 또 카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정보기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해 촬영정보의 처리와 일원적 관리를 한 시스템화된 구조의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것들을 포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하의 카메라에 대해서는 오로지 사용 목적 및 실태가 방법 목적이므로, ‘방법카메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외에서는 본질적 기능을 가지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감시카메라,’ ‘감시·방법카메라’로 했다.

급되는 문제, 특히 실종사건 등 범죄방지에 따른 개인의 인권·프라이버시 등에 대해 검토를 더하려는 것이다. 감시카메라의 설치·대상 공간과 같은 경우에도 폐쇄적인 공간(건조물, 주차장 등의 관리지역 등)과 일반시민에게 열린 개방적인 공간(도로·공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개방적인 공공 공간에서의 감시카메라 설치운동과 실종사건 등 범죄예방에 한정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하지만, 영국의 감시카메라 규제상황은 공사(公私) 영역에 걸친 것이므로, 기본적 관점으로서 공공 공간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기로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이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공 영역에서의 감시카메라의 설치, 사용, 운용과 범죄방지 문제로 한정해 감시카메라의 본연의 자세, 한계(허용범위, 윤리)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설치, 촬영대상 범위가 공공 공간이 미치지 않는 사적 공간·영역(건물, 가옥, 저택)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감시카메라의 설치, 운용문제를 검토할 때, 그 행위(작용) 자체가 양자 즉, 한쪽의 설치·운용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익과 다른 쪽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초상권 등의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 사적이익에 대한 공적이익 보호라고 하는 우월적 이익보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논하는 본래적으로 익명성이 유지되는 공적 공간에서의 감시카메라의 설치, 운용은 공공(내지는 공중)적 이익을 목적으로 즉, 그것을 정당화 사유의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 수단·방법, 결과(균형원칙 등의 고려 등) 검증방법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주시해 두고자 한다. 공적 공간에서의 감시카메라의 설치, 운용이 과연 우월적인 이익보호원칙에 맞추고 검증할 수 있는가, 상정되고 있는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한다.²⁾

II. 지방도시에 감시·실종예방카메라 설치

여기에서는 일본 광역자치단체인 도쿄도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보급되어 있는 감시·실종예방카메라의 설치운동 상황이 있는 가운데 지방도시에 있어서의 최근 그것의 설치, 운용의 경과를 봄으로써, 감시카메라 설치, 운용의 개별사례 중

2) 또, 방법 카메라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高橋直哉, “防犯カメラに關する一考察,” 法學新報 第112卷 第1・2号(2005年), 81頁.

에서 그것의 의미와 문제를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³⁾

1. 하마다시의 감시카메라 설치와 과제

시마네현 하마다시의 방범(감시) 카메라 설치는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중대사건 발생]

방범카메라 설치의 단서가 된 것은 2009년 10월 26일 하마다 시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시마네현립 대학생의 행방불명, 사체유기 사건(이하, 여대생 유기 사건)에 있다.⁴⁾

[2단계 안전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설립]

여대생 사체 유기 사건은 하마다시의 상공회의소 회장 이와타유리오를 회장으로 취임해서 ‘안전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의 설립과 모금활동을 이끌었다(2009년 12월 21일). 이 모임의 시민 기부 요청의 취지는 피해자 부모님의 ‘지금 이상으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로등이나 실종사건 예방 등 방범카메라를 설치해 거리를 밝히는 활동에 도움을 주신다면 가족으로서도 감사하고 본인도 감사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범인의 조기체포와 범죄방지를 위한 행동’ 모금활동이 개시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배경에는 ‘지극히 흉악한 사건의 발생으로 내외에 대해 하

3) 마에다 마사히데(前田雅英), “범죄통계로 본 신주쿠 방범카메라의 유효성,” юри스트 제1251호 (2003년), 154면, 경찰이 설치하는 길거리 방범카메라 시스템에 관한 연구회·최종정리(안) https://www.npa.go.jp/safetylife/seianki8/7th_siryou_1.pdf 참조.

4) 사건은 당시 시마네현립 대학생 피해자 히라오카 미야코(平岡都)(여성, 당시 19세, 가가와현 사카이테시[香川縣坂出市] 출신)가 하마다시내 아르바이트 근무처였던 쇼핑센터 ‘유메타운 하마다’에서 퇴출된 오후 9시 넘어(동점의 폐쇄회로 촬영기록) 2.5km 앞의 대학 여자 기숙사의 귀가 도중, 행방불명이 되어 다음 달 11월 6일 (동점의 폐쇄회로 촬영 기록) 2.5km 앞의 대학여자 기숙사에서 발견되었다. 2015년 6월(현재)에 이르기까지 가해자의 특징을 포함하여 이 사체유기 사건의 전모 규명은 되지 않았다. 덧붙여 2012년 사체유기 사건의 공소시효(3년) 이므로, 용의를 살인(살해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의 계속을 검토하게 되었다(2012년 9월 28일, 니혼게이지이 신문). 휴고쿠 신문 ‘하마다 학생 유기 사건 1년 유력 정보 없음 수사 난항’ 2010년 10월 26일. 동 ‘하마다 학생 살해 사건 발생 4년 수사 난항’ 2013년 10월 26일 시마네. 시마네현 경찰·히로시마현 경찰의 합동 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의한 ‘수사 특별 보상금 대상 사건’으로서 상한액 300만엔을 상한액으로 하는 수사 협력 경비를 제시하고 있다(2016년 2월 25일까지). 산인중앙일보, 2015년 2월 26일. www.pref.shimane.lg.jp/police/hamada.html.

마다시는 위험하고 어두운 거리라는 인상을 주는 결과가 되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현립대학의 학생뿐만이 아니라, 하마다 시민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아직 범인체포에 이르지 못했고, 끝없는 불안이 거리를 뒤덮고 있다’는 상황인식에 서 있다.⁵⁾ 이 모금활동은 경찰의 치열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범인체포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한 위험한 마을에서 시민의 안전한 마을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발로로서의 움직임이었다.

[3단계 하마다 시장의 방범카메라 설치 운용고시]

이듬해인 2010년에 들어서 하마다시는 2007년에 ‘하마다시 범죄가 없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조성 조례’(3월 23일, 조례 제7호)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 제5조의 ‘시의 책무’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에 의한 2010년 2월 22일 ‘하마다시 방범카메라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요강’(이하, 요강)을 고시 제17호로 공포했다고 한다.⁶⁾ 시 설치의 방범카메라는 지역주민이 대표하는 시의회에 의해 제정된 ‘안심 안전한 마을 만들기’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시는 이에 따라 실종사건 예방 등 방범카메라의 설치와 운용을 행하고 있는 주민요구·자치를 반영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조례는 ‘안심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3개항의 기본이념(사항)을 기본으로 시와 시민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동을 추진할 의무를 지는 것을 밝히고 있다(제4조). 그 3개 항목의 기본이념은 ① 시민 개개인의 자주방범의식의 고양, ② 함께 지지하는 범죄 없는 지역사회 형성, ③ 범죄를 일으키기 어려운 환경 정비(제5조)이며, 시장의 행정권한(요항 결정)에 의한 방범 카메라의 설치, 운용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은 이 제3호 또는 제2호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시는 조례를 근거로,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요강 제1조), 정비하는 방범 카메라에 관해서, ‘그 설치 및 운용’에 대해 필요사항을 정한 것이 요강이라고 한다. 이 고시에 의한 요강을 근거로 하여 계속되는 방범 카메라의 수입, 설치, 운용이 진전되게 된다.

5) <http://www.u-shimane.ac.jp/university/security/measures/2009-1222-1039-5>. 후에 “하마다시 범죄없는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가 발족했다.

6) 동(同) 요강의 제정, 시행에 앞서, 몇 차례의 “하마다시 개인정보 보호심의회”가 개최되어 동(同)심의회로부터의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시장은 요강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동(同) 심의회 사무국 공청회 2015년 6월 22일).

(조직편제)

시장 아래에 방법카메라 설치 등의 관리 책임자를 두고, 총무부장이 이 임무를 맡아 카메라 및 화상의 적절한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한다(제3조). 이것으로부터 소관부서는 구체적으로는 총무부의 ‘안전안심추진과’가 담당부서가 되고, 이 아래의 ‘방재안전계’에 담당자인 전문기획원이 배치되어 있다. 녹화정보에 관해서는 ‘하마다시의 정보보호 조례’(2005년 10월)의 적용을 받아 이 조례 중의 개인정보, 공문서 개인정보 파일의 취급이 관리된다.

(설치장소, 기수, 작동시간)

시장이 ‘필요최소한의 촬영대상 구역’에 설치한다고 하고, 이 경우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대상구역, 운용개시일’을 고시하게 된다(제4조). 현재 16기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 시에는 방법카메라의 ‘촬영 대상 구역의 잘 보이는 장소’에 방법카메라 설치의 내용을 표시한다(제6조). 구체적으로는 표시는 공원조명 등 최상부에 설치된 실종예방 등 방법카메라의 경우, 그 중하부 부분에 ‘방법카메라 작동중’(백판에 적자 내지 황판에 흑자로 설치자명을 표시)의 표시물이 있다. 이 감시카메라 작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종일 작동한다(제5조).

덧붙여 방법카메라의 설치에 관해 ‘방법카메라의 유용성을 인식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마다시 방법카메라의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2010년 6월 28일)을 마련하고 있어 ‘상정 사안’으로서 아이 등의 납치·말걸음,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생명과 관련되는 사실’을 들어 그것과의 대응으로, 설치장소에 대해, ① 불특정 다수자의 이용 장소, ② 촬영대상 구역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사적 공간(특정 개인·건물)이 촬영되지 않도록 배려를 한다고 하고 있다(제1조-제6조). 시도와의 주요 간선은 현도, 국도로 지정되어 있지만, 시마네현 하마다시는 1989-1991년에 히로시마현과 하마다 고속자동차도로 연결된 지역이며, 대도시부가 있는 히로시마현의 산요에서 직통의 일본해인 인구 5만명 도시인 것을 고려해서 차량을 이용한 광역 유괴범죄도 의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업무의 일부 위탁)

실종사건 예방 등 방법카메라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전 속에 있는 것이므로 시가 독자적으로 완결하는 설치·운용 업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시가 관리하는 카메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0기는 로컬형이라고 하는 시설로 시 자

신이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낮은 테크놀로지는 아니더라도 업무위탁이 필요 없는 것과 나머지 6기는 네트워크형이라고 하는 하이테크놀로지의 시설이 있다. 후자의 네트워크 폐쇄회로(CC)TV는 그 운영을 위해 외부인에게 일부를 위탁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시(위탁자)는 통상 관련업자이지만 수탁자와의 사이에 수비의무를 포함한 준수사항을 명기하는 등의 계약서를 교환하고 있다(제10조). 이것이 이하의 3사에 의한 보유 기술·서비스·인프라 등의 구축 세트를 하마다시에 무상 제공되고 있다.

(실종사건 예방 등 방범카메라 시스템 관련 회사 구축 네트워크의 하마다시에 무상 제공)

2010년의 4월, 세콤과 다른 3사는,⁷⁾ 이 ‘안전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에 대해서 ‘방범카메라 네트워크의 구축-범죄가 없는 안전하고 안심인 마을 만들기 강화를 위한 기업 제휴’로서 2기의 방범카메라를 하마다 시내에 설치하는 ‘방범카메라 시스템’을 기증하는 것으로 하고, 동년 8월에 운용개시 예정으로 설정했다(실제 개시는 10월에 완료되었다).

2010년 3월, 2기(로컬형)의 방범카메라가 하마다시에 의하여 독자 설치가 되어 운용이 개시되었고 이어, 동년 10월에는 안전을 지키는 모임으로부터의 기증받은 카메라(네트워크형)의 운용이 개시되었으며, 현재(2021년 9월말) 하마다시내의 시유지(공원), 길거리(주요 시도), 주차장(상업시설 부근), 그 외 시설(대학, 역, 헬스 시설) 등에 이르러 16기가 설치되었다. 내역은 기증받은 10기(안전을 지키는 시민의 회의가 7기, 현방법협회가 3기), 시의 독자설치 6기이다. 모두 기증받은 네트워크형 카메라 6기의 원래 관리는 세콤 출신 인사가 맡고 있다. 나머지 10기는 신규 차이는 나지만 지역 방범카메라로 시가 직접 관리한다. 양형에 따라 기능 및 관리 유지 운용비용에 차이가 있다.

7) 3사는 이와미 케이블 비전 주식회사(하마다시), 세콤야마카게 주식회사(마쓰에시), 주식회사 GNS(도쿄도)로, 방범카메라 시스템(네트워크형)은 동 3사가 보유한 기술·서비스·인프라 등을 활용해 구축된 네트워크로, 얻은 기록 영상을 포함한 개인정보는 GNS사가 실시하는 ‘동체제거기술’에 의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동체제거기술이란 ‘움직이는 물체(통행인이나 주행차) 등을 제거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 상태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며.. 본 시스템에서는 PC,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카메라 화상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방범 자원봉사나 학교 관계자가 이용하게 됨으로써 통학로 등의 안전확보 향상에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www.secom-sanin.co.jp/news/ 2010/20100428_cam/www.secom-sanin.co.jp/news/

(입수 이미지 정보의 관리, 열람, 제공)

시장은 CCTV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화상에 한하여 한정된 대상자에게 열람 시킬 수 있으며(제8조), 화상정보라고 하는 ‘화상 및 화상을 복제하거나 인쇄한 것, 기타 화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제공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피제공자에게 준수사항을 붙여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제9조 제2항).⁸⁾

형사소송법상(제197조 제2항)의 수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문서에 의한 제공이 요구된 경우 시장재량으로 제공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1호). 화상정보의 제공 사실에 대하여 시장은 연도별로 실적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제9조 제3항).⁹⁾ 또한 시장은 화상보존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제7조), 그 기간은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긴 네트워크형으로 1개월 사이클이다. 시장은 보존기간 경과 후에는 이미지를 삭제한다(제7조 제3항).

[4단계 방범카메라 설치 운용]

현재, 크게 2종의 네트워크형(6기설치: 2010년 2기, 2011년 4기)과 로컬형(10기설치: 2010년 초기 2기, 2011년 5기, 2015년 3기)의 방범카메라 16기가 가동하고 있다. 방범카메라 설치에 따른 경비(운용비용 2014년 단 년도)는 총액 370여만 엔이다. 그 내역을 보면, 네트워크형 및 구형의 로컬형 등 간이형이 아닌 감시카메라(10기)에 의한 ‘연간 보수·경비 위탁료’는 297만여 엔이다. 네트워크형(6기만) CATV(케이블 텔레비전 회선)로서 민간업자에게 지불되는 요금(경비)은 29만여 엔에 이르고 있다. 총경비에서 차지하는 네트워크형 카메라의 운영비용은 71%이며, 민간보안 사업자에 대한 의존·위탁 상태를 알 수 있다. 총경비를 당장의 운전비용으로 보았지만, 기재의 감가상각 등을 계산에 넣고 또 증설의 가능성과 합쳤을 경우, 더욱 변동하는 요소가 있지만, 이 카메라에 의한 ‘방범경비’와 시민의 안심·안전, 범죄방지의 비용 혜택이 문제가 될 것이다.¹⁰⁾

8) 화상의 보존기간은 시장이 정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외 복제, 인쇄를 금지한다(제7조).

9) 기타 제공은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제공이 요구되고 또한 개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이다(제9조 제1항 제2호). 그 때에는 ‘제공일, 제공처, 제공이유 및 제공한 화상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화상정보 제공기록부’에 기록하고 매년 그 실적을 공표하게 된다(제9조 제3항).

10) 하마다(浜田)시 총무부 안전 안심대책실, ‘하마다시 방범카메라 설비 일람’(2015년 3월 9일 현재).

[방법 효과]

그렇다면, 이 방법카메라 설치·운용의 목적인 범죄 예방(요강 제1조) 효과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일까? 구체적인 실증적 데이터에 의한 검증방법이 아직 미확립된 상태이다. 단, 하마다시의 범죄인지 건수는 방법카메라 설치 후인 운용(전 4기) 개시된 2010년(3월 2기, 10월 2기), 그 후 2011년(전 13기) 이후의 추이로 보면, 유의성 있는 증감을 지적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¹¹⁾ 그러므로 보안 카메라가 범죄억제 효과를 봤다고 귀결될 단계는 아니다. 또, 설치효과에 관해 검증·조사하는 기관은 당사자인 시 및 제3자 기관으로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단계에서는 오히려 시 레벨의 방법카메라의 설치·운용(존재사실·표시와 정보)이 시민(주민)의 범죄로부터의 ‘안심·안전’이라는 심정에는 응할 수 있는 것이었다.

[고찰]

여기에는 영국에서 지적된 시민의 ‘범죄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방법과제를 범죄대책·방지의무가 국가·지자체 수준에서, 시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떠안는다고 하는 범죄(방지)에 대한 책임(확산) 전략의 양상을 오늘의 일본에서도 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¹²⁾

<목적>

하마다시의 실종사건예방 등 방법카메라는 경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범위에서 비(강제)권력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설치, 운용인 것에 그 특징이 있었다. 그 목적은 단적으로 ‘범죄의 예방’(요강 제1조, 취지)에 있었다. 이것은 2009년의

11) 년도(1~12월)별 형법범죄 인지건수는 방법카메라 설치 년인 2010년부터, ‘총 건수(내역 절도범, 흉악·조폭범)’에 대하여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388(248, 13)건, 2011년 358(236, 20)건, 2012년 382(264, 12)건, 2013년 336(239, 14)건, 2014년 354(263, 17)건.

12) 영국의 범죄방지 대책을 민간에 전가하는 책임화 전략(responsibilization strategy. 갈런드의 조어)에 대해 참고 D. 갈런드, “치벌적 사회,” 島大법학 제39권 제3호 (1995년), 139면. ‘국가만이 범죄의 방지와 통제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 밖의) 다른 것이 책임을 져야 한다.’ David Garland, *The Culture of Control: Crime and Social Order in Contemporary Society*, Oxford U.P. 2001, pp.307. 1980년대 이후, 국가 기능·능력의 한계로 시민의 범죄(피해자화)에 대한 불안을 배경으로, 커뮤니티 폴리싱, 안전의 협동 창출 등이 주창되어 비국가적인 조직·개인의 범죄 예방·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주창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Ibid., 121-124.

현립대학생 살인·사체손괴 사건에 의한 시민의 ‘안전하고 안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시 내외에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현립대학이 현 이외에서 학생의 입학을 받아 들여 이 대학 교직원·학생이 하마다시에서 차지하는 경제·문화 등의 위치에서 앞으로 ‘지역의 안전은 지역에서 지킨다’(조례 제8호 전문)라는 인식에서 일발로 방범카메라의 설치, 운용이 있었으며, 또한 ‘범죄가 없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의 대회, 집회가 개최되어 온 것이었다.¹³⁾ 방범카메라의 목적, 운용은 주요하게 직접적으로는 범죄의 일반예방 목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현 경찰(수사기관)로부터의 조회, 정보제공은 간접적으로는 기발생의 범죄피의사안 대응이라는 범죄적발·검거(목적)에 연동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진 것이었다(요강 제9조 제1호).

<관리>

시장이 화상에 대하여 기간을 한정하여 보존하고 화상정보의 외부 제공이 있을 수 있으나, 기간 만료 후에는 삭제하는 것이며(요강 제7조 제3항), 오늘날까지 외부 조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 카메라의 기종(네트워크형)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부위탁을 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처리화상(정보)도 기간만료에 의하여 삭제된다. 실제로는 신규 방범카메라의 기종에 따라 삭제(자동 내지는 이미지 삭제)기간은 1주일에서 장기간으로는 1개월이다(2021년 6월 24일 청취기준).

<근거법령, 체크 기능, 제3자 기관>

카메라의 설치운용은 국가차원의 근거입법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시장 고시(告示)의 ‘요강’에 의거한다. 화상정보 취급은 동 고시 외에 ‘하마다시 개인정보보호조례’(2005년 제정 하마다시 조례 제21호)¹⁴⁾에 의하고 있으며, 실시기관 시장에 대한 공개청구자에 의한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된다(동 조례 제16조 본문).

카메라 설치, 운용은 촬영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13) 사건 후의 하마다[浜田]시에 있어서의 안심인 마을 만들기의 움직임으로서 현·현 경찰 등에 의해 “범죄가 없는 안전하고 안심인 마을만들기 추진 현민 대회”(2009년 12월 21일)가 현립대학 강당에서 약 700명의 참가가 있어 개최되었다.

www.tsk-tv.com/?m=news&f=20091221&n=1 하마다시, 시마네현립 대학의 사건관련 후인 www.tsk-tv.com/에 의해 개최되었다.

14) www1.g-reiki.net/Hamada/reiki-houbun/r132_RG00000035.html

하나, 이 요강의 제정시행에 있어 시장은 하마다시 개인정보보호 심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동 제6조 제4항). 이러한 점에서 카메라 설치운용의 규정인 요강은 시 행정내부의 제3자 기관에 의해 ‘개인정보의 수집’의 가능성에 관한 체크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상정보 제공에 관해서만 매년도 실적에 대해서 행정(시장)의 공표로 되어 있지만, 직접 의회에 규정상 보고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다. 이로부터 카메라에 의해 얻어진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려면, 이 개인정보보호 조례에 의한 절차 밖에 없겠지만, 화상에 의한 특정을 선행하고, 삭제를 요구하고, 삭제하는 것은 화면 해석도의 정도와 미삭제 기간 내에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대한 화상정보제공이 있는 이상 대항적으로 삭제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존재여부에 대한 어떠한 고지(방법)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화상정보(데이터)는 개인의 식별과 그 개인의 속성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의 점으로 또 자치단체가 적정한 관리·공개를 실시하는 ‘행정문서’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의 점에서 제외 정보·문서의 기준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의 논의는 파고들지 않았다.

2. 시마네현 내 공공도로, 가로상의 감시카메라 설치

[현청 소재지 실종사건]

지금까지 보아온 2009년 10월 26일에 시마네현 서부의 하마다시에서 일어난 시마네 현립 대학생 히라오카도의 행방불명 사건으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2012년 9월 27일, 이번에는 시마네현 동부의 마츠에시에서 카시와기 사치코(26세)의 실종사건이 발생했다. 이 현청 소재지에서 현내 최다의 인구(19만 4,000여명)를 가진 도시부의 마츠에시에서 발생한 여성의 행방불명 사건은 같은 해 9월 27일 오전 1시 50분 지나서, 근무하는 음식점이 있는 마츠에시 이세미야초의 현도에서 국도 9호선 방향을 향해 자차(도요타 ‘bB’ 필화이트)를 주행하고 있던 것을 마지막으로 차마저 행방불명이 된 것이다.¹⁵⁾

15) 방범카메라로 촬영되어 판명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시와기는 9월 27일, ① 오전 0시 20분 남성 손님 2명과 근무하는 음식점을 나와, 동 2명과는 다른 음식점에 갔다

같은 날 밤 가족으로부터의 수색요청이 있었다. 이 실종사건이 발생한 2012년 봄에는 심야에서도 영업하는 음식점이 있는 변화가인 이세미야 정에는 마츠에 신대교 상점 진흥조합에 의해서 방법카메라 8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 카시와 기의 행방불명 직전의 본인이라고 생각되는 모습이 이 방법카메라에 촬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차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도 실종상태인 채로 있다.¹⁶⁾

[방법카메라 증설 운용]

이와 같이, 이미 상가에는 민간 상점조합에 의해 8기의 방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시마네현 경찰은 2014년에 들어서 현경 주체로의 본격적인 ‘길거리 방법카메라 시스템’(이하, 방법카메라)의 설치·운용에 들어갔다. 이 보안카메라는 ‘변화가의 보안대책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것이며, 그 엄격한 운용을 위해 두 개의 경찰행정 내부의 아래 규정 및 요강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 경찰은 카메라의 설치목적으로 변화가·환락가에서의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의 범인추적 및 범죄의 흔적 확보 등의 신속·적확한 대응에 유용하게 쓰기로 하였다. 여기에 카메라의 설치목적이 하마다시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목적으로 보여진 ‘범죄예방’으로부터 ‘범인 추적·범죄 발생 시의 신속·적확 대응’이라고 하는 예방 기능으로부터 사건(범죄)발생 시의 즉시대응 태세(체포·수사)의 기능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었는데 특징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설치목적의 차이가 방법카메라의 설치·관리자인 앞에서 본 경찰권을 가지지 않는 자치단체와 경찰권을 가지는 현(공안위원회)·현 경찰로부터 발생하고 있어, 이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에 대한 신속대응의 2가지 항목 가운데, 후자의 범죄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법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점으로부터도 카메라를 ‘방법’으로 한정된 호칭으로 하는 것은 사물의 반면 밖에 파악하지 않고 ‘감시카메라’의 표현

가 헤어진 것, ② 오전 2시경, 자신의 자동차 주차장이 있는 북쪽으로 걷고 있던 것, ③ 그녀의 것으로 보이는 차가, 1킬로 이상 북쪽에 있는 자택과는 반대로, 지방도를 남쪽으로 주행하고 있던 것이 판명되어 실종 직전의 폐쇄회로(CC)TV의 카메라 신대교상가 진흥조합은 마츠에시 이세미야초 상가 점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메라 촬영 이미지의 상시 감시는 하지 않고 녹화분은 보존기간(주로 1-2주) 경과 후에는 자동 삭제하도록 하는 등 독자적으로 운용규정을 정하고 있음. 산음중앙신보(山陰中央新報), ‘자유의 풍경’, 2014년 2월 19일.

16) 산인중앙신보(山陰中央新報), 2012년 10월 16일, ‘마쓰에 여성 불명 방법카메라 이미지 공개’ <http://www.pref.shimane.lg.jp/police/hanzai/zyouhou / missing / 20121006>.

이 실체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규정이란 ‘시마네현公安위원회 규정 제1호’(2014년 4월 10일)의 ‘길거리 방법카메라 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며,¹⁷⁾ 요강이란 ‘시마네현 경찰본부장 예규 통첩’의 ‘길거리 방법카메라 시스템 관리 운용요강’(이하, 요강)을 가리킨다.

(공안위원회에 의한 현 경찰설치 카메라의 적정운용 확보)

규정은 현 경찰의 설치 카메라의 적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카메라 설치·운용의 기본원칙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 기타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제3조)는 훈시규정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당한 침해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뒤의 요강에서 보듯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관리자에 의한 설치·운용체제의 관리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요강 제3호).

오히려 운용조직 계통(규정 제4조), 데이터(전자적 기록매체)의 활용가능성(동 제6조), 동 활용 시의 공안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동 제7조), 운용상황의 현 경찰본부장의 정기적인 공표의무(제8조)를 개괄적으로 나타냈을 뿐이다. 그러므로 카메라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현 경찰본부장이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관리운용 체제)

현 경찰 내부에 생활본부장을 당직으로 하는 총괄책임자가 설치된다(요강 제3호 제1항). 그 아래에 위계적으로 총괄부책임자(생활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의 당직), 각 설치경찰서의 장이 관리운용책임자가 되고, 그 관리운용 보조자는 해당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이 맡는다. 카메라의 조작·데이터 검색·제공의 사무는 말단의 경찰관이 실시하는데, 동인은 담당자 관리운용 책임자가 지정하고 관리운용 보조자의 휘하에 있으며, 조작 담당자라고 불린다.

(데이터 활용, 운용상황 보고)

데이터의 보존기간은 7일-14일이다(제5조 제1항). 데이터를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확인·이용하는 경우에는 경찰서 직원은 관리운용 책임자(해당 경찰서장) 앞

17) www.pref.shimane.lg.jp/police/seikatsu/matidukuri/2607_camera.

으로 ‘데이터 검색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동 책임자가 검색장소 지정으로, 관리운용 보조자의 지휘 하에 조작담당자에 의해 검색을 하게하며, 그 결과는 조작담당자에 의하여 ‘데이터 검색신청서’에 의하여 ‘데이터 검색’에 의하여 검색 데이터를 복제하여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관리운용 책임자는 동 직원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작성,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복제데이터 제공부’에 기재된다.

데이터 제공을 받은 자의 소속 기관장은 이 복제 데이터를 보관고 등에 보관하고, 불필요 해졌을 때 폐기하고, 관리운용 책임자에게 보고한다(제5조 제4항). 다른 광역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의뢰에도 준용한다(동 제5항). 카메라 시스템의 운용상황은 반년마다 경찰본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된다(제7조).¹⁸⁾ 데이터 및 복제 데이터는 경찰조직 내부에서의 관리이다. 카메라의 적정한 설치·운용은 관리운용 책임자 공안 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의한 엄격한 운용절차, 그 보고와 홈페이지의 공개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알 수 있지만 결과 보고만으로 외부 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컨트롤 시스템은 없다.

[현 하에서의 카메라 설치의 확대와 그 요인]

시마네현 산하의 방법 감시카메라 설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즈모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즈모시 역 등 방법카메라 취급요강’(2005년 이즈모시 고시 제35호, 개정 2010, 2012, 2014년)의 책정에 의한 일본철도 역사 주변에 자단체에 의해 설치, 운용되는 상황을 낳고 있다. 그리하여 길거리 방법카메라 기수는 2009년 29기였던 것이 같은 해 현립대학생의 살인, 사체유기 사건을 계기로 2010년 이후 급증하여 2013년 말에는 184기가 설치되었다고 한다.¹⁹⁾

여기에는 시사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 범죄의 발생건수는 파악할 수 없다고

18) 카메라는 현경 주체로 마츠에서 이세미야마치[松江市 伊勢宮町](마츠에 경찰서, 마츠에 역전 파출소)에 8기 설치되어 있고, 신설치의 2014년 상반기 및 하반기의 “길거리방 방법카메라 시스템 운용상황”에 의하면, 영상 데이터의 활용 건수(사안 종류)는 4건(도로교통법 위반, 강제외설) 및 2건(도로교통법 위반, 건조물침입 미수 피의)이었다. 산인중앙신보 “현경의 지침-부국장 ‘인터뷰(12),’ 2015년 5월 10일. 시마네현 경찰 HP <http://www.pref.shimane.lg.jp/police/hamada.html> “가로등 방법카메라 시스템 관리 운영요강,” 현경 본부장 통달. 현 공안위원회 “가로등 방법 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규정,” (시마네현 공안위원회 규정 제1호, 2014년 4월 10일).

19) 산인중앙신보(山陰中央新報), ‘거리 방법카메라 396대,’ 2014년 2월 19일.

해도, 공공기관(경찰, 검찰)에 의한 범죄인지 건수와 그 검거율의 저하, 침체 속에서,²⁰⁾ 시마네현 하에서 2009년의 현립대살인·사체손괴 사건에 의해서 실종지의 자치단체인 하마다시에서 수사당국에 의해서 범죄자가 검거되지 않고 미궁으로 빠진 가운데 범죄로부터의 공포·안전·안심이라고 하는 시민의 체감치안이 시라고 하는 자치단체 수준으로의 카메라 시스템 설치를 이끌었던 것이다. 게다가 2012년 발생한 마츠에 시내에서의 여성 실종사건은 민간의 방범카메라 기설치 및 촬영과약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욱 행정, 현경찰에 의한 직접적인 카메라 설치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대책에서 경찰·검찰의 기능 저하는 궁극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국가(경찰)가 범죄대책에 관여하고, 직접적으로는 민간이나 경찰력을 가지지 않는 자치단체가 방범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용해서 범죄대책의 일단을 담당하는 책임을 지는 시대, 후기자본주의 범죄대책인 책임화 전략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본장 제1절 참조). 바꾸어 말하면, 하마다시의 방범(감시)카메라 설치에 또 마츠에 시의 민간상점조합에 의해 8기의 방범카메라가 설치하는 시민의 범죄불안에 대처한 안심·안전하게 옹한 포폴리즘적 형사정책이며, 이것에 대해 현 경찰에 의한 마츠에 시에 있어서의 신규 8기의 방범카메라 설치, 운용은 강력한 국가에 있어서의 강한 경찰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¹⁾

20) 검거건수를 인지건수로 나눈 백분비인 검거율은 2001년에는 형법범으로 38.3%, 일반 형법범으로 19.8%로 전후 최저를 기록했으나 14(2002)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18(2006)년 이후는 제자리걸음을 하였고, 24(2012)년은 형법범 총수로 53.1%(전년대비 0.7pt 상승), 일반형법범으로 0.7%(전년대비 0.7pt 상승), 법무성 범무종합연구소편, 2013년판 범죄백서(닛케이인쇄, 2013년), 형법범은 형법 및 특별법을 포함하나, 일반 형법범은 형법범에서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등을 제외한 것으로, 일반 형법범에서 검거율을 보는 시점은 고의범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1) 말콤 필리(후지이 쓰요시(藤井 剛) 옮김), ‘일본과 서양에서의 범죄 진계에 관한 세 가지 가설,’ 龍谷法學 제41권 제3호 (2008년), 165-183면. 범죄 통제상의 법규범에 어긋나는 비근대적 요소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약한 시민사회의 제도를 가진 ‘강인한 국가’라는 전체에 의거하고 있다. 179면. “미합중국이나 영국에서처럼 약체국가에서 범죄대책은 포폴리즘 형사정책에 의해 형성된다. 전문가가 아닌 입법자가 정책을 책정한다.” 동 178면. “강인하고 능동적인 국가에 연약하고 반작용적인 국가보다는 포폴리즘 형사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능동적인 사명에 모순되지 않고, 강인한 국가는 형사사법 과정에 대해서, 형벌에 관한 철학을 수반하는 충분히 짜여진 이론과 결연히 행동하고, 적어도 세상에 의한 간섭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관료를 통해서 이 비전을 실행하는 것이 많다.” 동 179면.

3. 경찰의 주체적인 CCTV 사용과 판례

2012년에 마츠에 시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후, 마츠에 시에서의 직접 현장찰이 방법뿐만 아니라, 신속한 범죄해결을 목적으로 감시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해 운용하기 시작했다. 마츠에 시내의 일부라고는 해도 시마네현에서의 경찰이 주체적으로 길거리에서 경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감시카메라(시스템)의 설치, 운용의 기능이 질적으로 전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다시 카메라촬영 주체가 시와 같은 자치단체가 아닌, 경찰이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감시카메라 사용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떠한 법적 취급을 해 왔는지, 재판의 결과 판례에서 결론에 도달하는 점을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경위로서는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있어서, 기기의 기능을 높이는 부속품(애플리케이션) 등(망원경, 연사, 필름으로부터 CD디지털형)을 이용한다고 해도 전통적인 단편샷(단사) 촬영용의 통상 카메라로부터, 더 나아가 연사 촬영용의 텔레비전·비디오 카메라류는 경찰관 즉, 사람(사람)에 의한 직접적인 사진촬영 단계가 앞서고, 그 후 감시카메라(시스템)를 통한 자료를 확보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장에는 무인의 간접적인, 기계(자동) 내지(정도 차이는 있지만 일정 원격 장소에 소재하는) 기계조작자(경찰관, 업무위탁업자 등)에 의한 감시·촬영(비디오) 녹화(가능)가 확실히 감시(방법) 카메라에 의한 촬영단계에 이르고 있어 오늘날 이것들이 공존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촬영장에 촬영자 존재의 논란은 의미가 없고 직접·간접의 ‘사진촬영’(을 이용한 수사)이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인물의 촬영(개별촬영)인가, 가로형 불특정 다수의 촬영(포괄촬영)인가의 대상의 한정 문제는 이제 유비쿼터스 사회의 과학기술 진전에 따른 카메라 시스템의 정밀도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구분이 의미가 축소되었다.

[판례, 법적 근거]

카메라의 대상자인 피촬영자는 초상권을 가지되 촬영주체인 경찰에 의해 공공복지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적 견해이다(판례). 이 독서 케이스가 된 것이 교토부 학원 데모의 최고재판소 판결이다. 이 판례에 따

르면, 사람은 초상권이라고 불리는 프라이버시 권리의 범주에 포함될 권리가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헌법 제13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에 의하면, 초상권은 ‘개인의 사생활상의 자유의 하나로서, 누구라도 그 승낙없이 함부로 그 외모·자태(이하 ‘외모 등’이라고 한다.)를 촬영받지 않을 자유를 가지는 것’이며,²²⁾ 자기의 사진이 촬영되지 않을 권리라고 한다. 동시에 이 초상권이 그 중 하나인 개인의 자유는 헌법 제13조의 ‘공공의 복지’의 규정에 의해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로 여겨진다. 이 ‘공공의 복지’로부터 경찰법(제2조 제1항)은 범죄수사가 경찰에게 주어진 국가작용의 하나로서, 경찰은 범죄수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찰관이 범죄수사의 필요상 사진을 촬영할 때, 그 대상 속에 범인뿐만 아니라 제3자인 개인의 용모 등이 포함되더라도, 이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형사절차, 특히 범죄수사 등에 있어서, 사진촬영은 어떻게 근거지워지고 있는 것일까? 헌법상의 조문 규정의 해석으로부터, 형사소송법상에도 사람의 체포·구류, 압류, 수색, 검증 등은 대상자의 동의 없는 인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하게 되지만,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합합리적인 범죄수사의 범위 내라면 초상권의 제약은 인정되게 된다.²³⁾ 사진촬영에 의한 사진촬영의 문언은 형소법 제218조 제2항의 규정에 있다.²⁴⁾ 그러나 사진촬영을 강제처분, 임의처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판례상 귀일하는 바가 없다.

법해석으로서 사진촬영은 임의처분이지만 강제처분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엄격한 요건을 두고, 형사소송법 제220조의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류, 수색, 검증>으로서 ‘체포의 현장에서의 압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것’(동조 제1

22) 대법원 판결, 1969(소화 44)년 12월 24일, 형집 제23권 제12호, 1625면, LEX / DB 27681653 (2-3면). 이 판결의 선행 판례와의 관계, 도달점, 그 의의에 관하여 간결하게 정리된 것에, 타미야 유타카(田宮裕), ‘수사에 있어서의 초상권과 그 한계-최고재판소 판례의 의의,’ 판례타임스 제243호(1970년), 14면.

23) 무라이 토시쿠니(村井敏邦), “범죄의 발생이 예측되는 현장에 설치된 텔레비전 카메라에 의한 범죄상황의 촬영녹화가 적법하다고 여겨진 사례,” 판례평론 제360호(1989년), 224면 참조.

24) “신체의 구속을 받고 있는 피의자의 ... 또는 사진을 촬영하려면 피의자를 별거벗기지 않는 한 제1항의 영장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제218조 제3항).” “...사법경찰직원은 범죄수사를 함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여 ...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동조 제1항).”

항)이나 ‘제1항의 처분을 하려면 영장은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등을 참조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익)과 침해되는 개인의 자유(초상권)의 이익 형량을 하여 사진촬영의 허용 한계를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²⁵⁾

즉, 사진촬영의 허용한계는 범죄의 채증인 수사에 해당한다고 하여 (준)현행법적인 상황사례에 있어서 증거보전의 필요성(광의)을 3가지 요건, ① 증거보전의 필요성(협의), ② 그 긴급성 및 ③ 수단의 상당성을 충족하는가에 있으며, 이 필요성은 달리 취할 방법이 없다는 것(보충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늘날의 합리적인 이유이다.²⁶⁾ 따라서 CCTV의 설치·사용에 있어서는 ① 목적의 정당성, ② 객관적이고 구체적 필요성, ③ 설치상황의 타당성, ④ 설치·사용에 의한 효과, ⑤ 사용방법의 상당성 등 5개 요건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초상권, 사생활권 등 구체적인 권리·이익 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권 행사의 적법성과 침해의 유무가 개별적으로 검토되며,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 구체적인 권리·이익 침해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권 행사의 적법성과 침해의 유무가 개별적으로 검토된다.²⁷⁾

25) 도쿄지방법원 40년 3월 8일. 무라이(村井), 전계주 (26), 225면. 최고재판소 판례 전의 판례에서, “얼굴사진 촬영은 일견 임의수사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회통념상 무형의 강제력을 구사하여 개인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의 보장된 여러 권리나 개인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며, 또한 한편 실정법상으로 보아도 형사소송법상 제218조 제2항의 규정 반면으로서 인신 구속을 받지 않은 피의자의 사진촬영은 영장을 요하며 동법 제197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강제처분에 포함된다”는 딱딱한 견해, 즉 사진촬영은 피촬영자의 동의나 법규상의 근거가 필요한 것이었다. 오사카 지방법원판결 1961년 12월 23일, 하(下) 형집 제3권 제11·12호 1270면, LEX/DB 27682744. 판례를 개관하고 검토한 것에, 호시 슈이치로(星周一郎), 방범카메라와 형사절차(홍문당, 2012년), 167면 이하.

26)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경찰비례의 원칙, 즉,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단은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적어도 그 남용에 이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결정 2008(헤세이 20)년 4월 15일 형집 제62권 제5호 1398면, LEX/DV 28145280. 비디오 촬영 사례이지만, “통상,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외모 등을 관찰받는 것 자체는 수인 하지 않을 수 없는 장소에 있어서의 것이다. ··비디오 촬영은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또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졌다고” 해서, 앞의 (준)현행법적인 상황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침해 범익의 성질 정도가 고려되어 수사 비례의 원칙은 유의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토 다카시(宇藤崇), “피의자의 외모 등의 비디오 촬영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юри스트 제1376호 (2009년), 208면.

27) 오사카 지방법원 민사부 판결, 1994년 4월 27일, 판례 타임스 제861호(1995년), 160쪽, LEX/DV27826141이 참고가 된다.

4. 소결

이와 같이 감시카메라의 설치 경위, 현상을 보면, 다음을 말할 수 있다. 시마네와 히로시마의 양현에 걸친 광역 수사의 어려움을 가진 여대생의 살인, 사체유기 사건의 발생은 미해결 상태인 것이 가속화 되어, 4년제 대학 유치의 자치체(하마다시)에 있어서 심각한 시민적 불안, 안전성의 문제, 치안예의 문제 제기였다.

행정으로서의 하나의 상징적 대응이 시장 권한에 의한 폐쇄회로(CC)TV의 설치였다.²⁸⁾ 그러나 수년 후에 마츠에시에서 발생한 여성 실종사건은 민간 감시카메라 설치구역에서 영상녹화가 되어 있었지만, 미해결 상태에 있었다. 이 결과 현도인 마츠에시에 있어서는 경찰 주체의 수사목적, 즉 범죄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 설치로 경사져 왔던 것이다. 즉, 민간 쪽에서 경찰 감시카메라 설치의 질적 전환을 볼 수 있다. 전자의 일반예방적 목적·기능은 후자에 있어 본격적인 경찰행정의 수사목적·기능이 감시카메라의 설치, 운용(사용)면이 되어, 시민의 프라이버시, 초상권과의 긴장관계를 한층 높이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감시카메라 설치·운용의 담당자(당사자), 그 목적, 허용성이 추궁 당하는 원점은 발생사건의 미해결, 범인 등의 검거의 불수에 있다.

시민의 증폭되는 안심·안전감의 염려는 실제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현대사회의 고립된 시민의 불안감이 있다고 해도(제4장), 그 실제 근거와 결합하여 증폭하고 있는 면은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오늘날, 범죄현상은 현실의 범죄발

28) 범죄기회론은 범죄자를 비범죄자와 특별히 구분하여, 차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도 기회의 유무에 따라 범죄를 실행하고, 하지 않거나 한다고 생각하여, 어떤 인간이라도 범죄에 미치지 않는 환경, 즉 범죄 방지를 배려한 환경 설계, 감시카메라 시스템의 채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마이 고이치·세리자와 카즈야(浜井浩一·芹澤一也), “범죄 불안사회,” (코분샤, 2006년), 161-162면. 미야케 타카유키(三宅孝之), “지역의 안전, 리스크와 범죄자의 사회내 처우,” 아사다·우에다·마츠미야·혼다·김편, “자유와 안전의 형사법학,” (법률문화사, 2014년), 695면 이하. 이 범죄기회론은 상황적 범죄예방론의 한 이론이다. 이러한 상황적 범죄예방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은 1970, 80년대에 클라크(Ronald V. Clarke)와 (Marcus Felson)에 의해 일상생활에서의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범죄예방전략들을 담고 있으며, 감시카메라(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Cameras)를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범죄예방장치들을 포함시켜 왔다. 이 이론의 문제를 논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von Hirsch, Garland, Wakefield, “Ethical And Social Perspectives O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Hart Publishing 2000, pp.230.

생 건수, 올바르게는 인지 건수에 관계없이, 특이한 사건을 계기로서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상이 퍼져, 범죄불안이 급속히 높아지는 모럴 패닉이라고 하는 상황 하에 있으며, 이것이 길거리, 점포, 주택, 주차장에서의 감시·방법카메라 설치를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응한 안심·안전의 거리 조성에 이론적인 근거를 주고 있는 것이 ‘범죄기회론’인 것이다.

<자료> 하마다시 방법카메라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요강

2010년 2월 22일 고시 제17호

제1조(취지) 이 고시는 하마다시 범죄가 없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조례(2007년 하마다시 조례 제8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시가 정비하는 방법카메라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용어의 의의는 당해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완결형 방법카메라(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공공도로변에 고정해서 설치되는 카메라를 말한다. 이하 동일)마다 녹화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2) 방법카메라 시스템 카메라와 정보기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해, 정보 처리 및 일원 관리를 하는 구조를 말한다.

(3) 방법카메라 완결형 방법카메라 및 방법카메라 시스템을 말한다.

(4) 화상 다음 화상을 말한다.

가. 완결형 방법카메라로 촬영 및 기록된 이미지

나. 방법카메라 시스템에 의해 촬영 및 기록되고 생성된 이미지

제3조 (관리책임자의 설치 등)

1. 시장은 방법카메라 및 화상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법카메라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2. 관리책임자는 총무부장으로 충원한다.

3. 관리책임자는 방법카메라 및 화상의 적정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설치 등)

1. 시장은 방범카메라의 설치에 있어 그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촬영대상구역이 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고시한다.

- (1) 설치장소
- (2) 설치 대수
- (3) 촬영대상구역
- (4) 운용을 개시하는 날

제5조 (작동 시간) 방범카메라의 작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종일로 한다.

제6조 (설치의 표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카메라를 설치할 때에는 방범카메라의 촬영대상구역의 잘 보이는 장소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제7조 (화상의 관리)

1. 화상은 시장이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2. 화상의 보존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기간으로 한다.
3. 시장은 전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신속하게 이미지를 삭제해야 한다.
4. 화상은 제9조 제1항에 정한 것 외에 이를 복제하거나 인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이미지 열람)

1. 시장은 폐쇄회로(CC)TV시스템으로 생성된 이미지에 한하여 대상자를 한정하여 볼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화상을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 (제공의 제한 등)

1. 시장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화상 및 화상을 복제하거나 인쇄한 것 기타 화상에 관한 정보(이하 '화상정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1948년 법률 제131호)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제공이 요구되었을 때

(2) 진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제공받고 개인의 권리의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제공목적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화상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화상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다음 사항의 준수를 요구한다.

(1) 화상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할 것.

(2) 제공을 요구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제공을 하지 말 것.

(제공을 요구한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또는 해당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화상 정보의 반환 또는 파쇄 등을 할 것.

3.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일, 제공처, 제공이유 및 제공한 화상정보의 내용을 화상정보제공기록부에 기록함과 동시에 매년도 그 실적을 공표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범카메라의 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 등에는 해당 위탁을 받은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조례의 적용)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해서는 하마다시 개인정보보호조례(2005년 하마다시 조례 제21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타) 제12조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본 고시는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년 8월 13일 고시 제119호) 본 고시는 201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Ⅲ. 영국의 감시 및 실종사건 예방 등 방범카메라

1. 역사적 경위-감시카메라의 설치·확대에서 법적 규제로

오늘날 사회는 유비쿼터스 사회라고 하는데,²⁹⁾ 그 중에서 감시카메라의 설치, 운용에 대해서는 첨단국의 위치에 있던 영국은 1961년에 런던 교통공사가 역에 최초로 설치했다는 전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³⁰⁾ 오늘날 영국은 세계인구의 1%에 불과한 것에 비해, 세계 감시카메라 대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강력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29) 유비쿼터스 사회는 ‘모든 장소에 정보통신 기술이 개재하는 상태’를 말하지만, 감시카메라와 컴퓨터 네트워크의 결합은 유비쿼터스 사회에 있어서의 감시카메라 문제이기도 하다. 사쿠마 오사무(佐久間修), ‘유비쿼터스 사회와 형사 실체법,’ *주리스트*, 제1361호 (2008년), 49면. 이 사회에서는 널리 전자 감시와 개인정보의 파악·누설·보호, 시큐리티,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억제 기능 등이 문제가 된다.

30) 선행연구로서 1998년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내무성 1984년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시무라 코지(石村耕治), *구미의 감시카메라 규제*, 237면, 호시 슈이치로(星周一郎), “영미에서의 길거리 방범카메라의 법적 규제,” *전계서·방범카메라와 형사절차* (홍문당, 2012년) 소장, 384면 이하. 오카모토 미키(岡本美紀), “길거리 방범카메라 시스템의 도입을 둘러싼 여러 문제-일본과 영미에 있어서의 현상의 비교검토,” *법학신보* 제112권 제1·2호 (2005년), 597면. 이시무라 코지(石村耕治), “구미의 감시카메라 규제 입법-감시카메라와 시민의 프라이버시,” *시라이시 타카시·오구라 토시마루·이타카키 류타(白石孝·小倉利丸·板垣龍太)* 편, *세계의 프라이버시권 운동과 감시 사회* (아카시 서점, 2003년), 237면. 야마구치 히비키(山口響), “감시카메라 대국 영국의 지금,” *코쿠라 토시마루(小倉利丸)* 편, *노상에 자유를-감시카메라 철저 비판* (임팩트 출판회, 2003년), 82면. 에시타 마사유키(江下雅之), *감시카메라 사회 - 이제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 않아* (고단샤, 2004년). 영국의 1999년 5월부터의 범죄 억제 계획·CCTV 구상을 통한 주택지 및 공공 주차장의 감시카메라망의 신설, 확장 상황, 예산(1999년 11월, 35계획, 약 78억원, 2000년 1월, 184계획, 약 700억원)을 밝혔다. 138면. 또한 도쿄도(경시청)는 2002년 2월 당시 ‘신주쿠 가부키초에 50대의 방범카메라를 설치했다. 촬영된 영상은 신주쿠 경찰서와 경시청 본부에 중계되며, 전담 담당자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영상은 본부에서 하드디스크에 기록되어 일주일간 보존된 후에 삭제된다’는 것을 당시 경시청 홈페이지로부터 밝힌 것으로 간주한다. 133-134면.

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³¹⁾ 감시카메라 법적규제 논의 다음과 같다.

1984년 내무부 가이드라인(Home Office Guideline)에 의하여 감시카메라, 경찰 사용 감시활동장치 등에 대한 규제, 투명화가 일정하게 이루어졌으며,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의회 과학·기술 특별위원회(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의 제5차 보고서(보고서)는 강제적인 실무규범(취급규정, 운용코드) Code of Practice)로 감시카메라 시스템 허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것은 민간, 공적기관 등에 대해 확대된 감시카메라의 설치, 운용에 대한 재검토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유럽인권조약을 받아들여 성립한 1998년의 인권법(Human Rights Act)의 성립, 동년의 데이터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2000년 3월부터, 동 개정 데이터 보호법에 의해 감시카메라를 소유하는 기관은 데이터 통괄자를 임명, 배치하는 것이 의무와 연결된다.³²⁾

상원 과학기술 특별위원회에서 1998년 2월 2일 내무장관(Alum Michael, HO Minister)은 그 제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지방(지자체) 차원에서는 규제 노력은 같지 않다. 캠브리지와 같은 몇몇 도시는 비교적 상세한 '실무규범'을 제정하고 있었다. 다른 도시는 보다 제한적인 규제 구상이거나 민간의 (자주적인) 실무 규정이다. 민간분야는 때로는 사업체인 CCTV Association에 의해 작성된 가이드라인에 맞는 것을 이용하고 있었다. 유럽인권조약을 근거로 하는 헌법적 시민자유는 공공 텔레비전에서 제공되는 감시에 관한 한정 영역에서는 아직 태어나 자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인권조약 제8조는 '(개인·사람의) 사적 생활의 존중'의 보장은 감시카메라에 의한 감시의 규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되

31) Big Brother Watch, Protecting Civil Liberties: The 2015 Big Brother Watch Manifesto, 2015, at 44. Daily Mail, UK, 27th March 2007. 데일리메일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경이로운 420만명, 즉 14명중 1명이 전 세계의 20%를 차지하는 대수의 카메라로 감시되고 있다고 한다. Id. 왕립공학회(Royal Academy of Engineering), "정부 또한 슈퍼마켓이 우리에게 관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가진 '위대한 형제(big brother)' 사회로 향하여 경사짐으로 인해 생활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도 경고하였다. 관계보고서의 저자 길버트(Nigel Gilbert) 교수는 평균적으로 런던 거주자는 매일 300기에 의해서 동회수 모니터 되고 있다고 한다. Id. www.dailymail.co.uk/news/article-444819/UK-11-worlds-population-20-CCTV-cameras. "위대한 형제"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미래 감시사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며, 이것에 빚댄 것이다. 동명소설, (1984년) 조지 오웰 (新庄哲夫 옮김) (1972년, 早川書房 1949년 출간), 8면.

32) 이 역사적 경위에 대해 [구미의 감시카메라 규제 입법-감시카메라와 시민의 프라이버시] 시라이시 타카시, 오구라 도시마루, 이타가키 류타(白石孝·小倉利丸·板垣龍太)편, 세계의 프라이버시권 운동과 감시 사회(명석서점, 2003년) 소장, 237면. 내무부 가이드라인 1984년 데이터 보호 커미셔너, 240면.

어야 한다고 하는 상황으로 추이해 왔다. 그런데 감시카메라 시스템은 그 촬영대상, 장소 생활·주택·상업 구역화, 공공도로상의 구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규범이 달라진다.

폐쇄회로(CC)TV의 규제방식과 실무규범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는 폐쇄회로(CC)TV 운영 상황에서의 차이도 된다. 차량(번호) 및 운전자의 감시목적의 경우와 일정공간(노상, 상가)의 직접감시목적의 경우란, 상위적인 법익, 즉 원활한 교통보장, 신속한 사고대응처리의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해·피해의 미연방지·인지, 치안의 유지(범죄공포의 해소)목적인지에 따라 감시카메라 일반규범으로 충분한 경우와 그 이외의 규제가 걸리는 경우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CCTV는 누적된 공통의 준칙을 따르게 되는 법이 있었다. 이들은 1998년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 2000년 조사권한규정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정보보호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2012년 자유보호법이 새로 추가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에 관해서는 여기에 도로교통 관계의 규제 입법이 추가되게 되었다.³³⁾ 그동안 2010년 5월 ‘연정: 정권강령’에서 시민적 자유의 확립이 외쳐지고, 감시카메라가 이루어 온 시민적 자유의 남용이 그 규제라고 하는 형태로, 입법화해야 할 단계에 있다. 이 배경에는 그동안 (노동당 정부 하에서) “지난 10년간 영국 국가들이 너무나 권위주의적이 되었고 기본적인 인간적 자유(freedom) 및 역사를 가진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를 남용하고 쇠퇴시켜 왔다”는 현 상황 인식에서 구체적

33) 도로교통에 한정된 감시카메라 시스템의 채용은, 행정관할 대상 구역의 차이는 있지만, 런던의 한 지역의 도로라면, 아래와 같은 법령에 의한 감시카메라의 규제를 받는다. Road Traffic Regulation 1984 (도로교통규칙), Road Traffic Offence Act 1988 (도로교통범죄법), Road Traffic Act 1991, London Local Authorities Act 1996 (런던지방관구법), The Road Traffic Offence (Additional Offence and Prescribed Devices) Order 1988, London Local Authorities Act 2000, The Transport for London (Bus Lanes) Order 2001, London Local Authorities Act and Transport for London Act 2003, Traffic Management Act 2004, The Civil Enforcement of Parking Contraventions (England) General Regulations 2007, The Civil Enforcement of Parking Contraventions (England) Representations and Appeal Regulation 2007, The Civil Enforcement of Parking Contraventions (Approved Devices) (England) Order 2007. London Council, Code of Practice for Operation of CCTV: Enforcement Cameras in the London Borough of Hammersmith & Fulham, Version 3.3-June 2012, at 3-4.

인 정책과제의 하나로 “우리는 폐쇄회로(CC)TV를 더욱 규제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³⁴⁾ 이는 영국이 오늘날 감시카메라 단속 검토에 들어갔음을 보여 주는 신호이다.

영국에서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감시카메라(시스템)에 대해 포괄적인 규제가 없었다. 1984년에 내무성 가이드라인의 도입으로 경찰이 이용하는 감시카메라 등의 감시활동용 장치의 가시화가 일정하게 도모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의 감시·실종사건 예방 등 방법카메라의 시스템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규제도 강하게 기울기 이전의 선행연구가 있지만, 오늘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감시카메라의 홍수라고도 할 수 있는 가운데 감시카메라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 더욱이 2012년에는 자유보호법(Protection of Freedom Act 이하, 자유보호법)에 의해서 실무규범(Code of Practice 실무 준칙)이 제시되어, 새로이 감시카메라 커미셔너(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 SCC. 이하 커미셔너라 한다.)가 배치되었다.³⁵⁾ 2012년 9월, 첫 커미셔너로 2009년 이래 전 국잠정감시카메라감사관(Interim CCTV Regulator)직에 있던 레니슨(Andrew Rennison)이 취임하였다. 이후, 2013년 8월 12일, 앞선 실무규범이 잉글랜드 및 웨일스 지방에서 시행되었다.³⁶⁾

2. 2012년 자유보호법

34) HM Government, The Coalition : our programme for government, Cabinet Office May 2010, Chapter 3, at 10. 동시에 EU제국과 국민과의 인권실태가 추궁당하고, 새롭게 확립할 필요성 때문에 유럽 인권조약 하에서의 모든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립하는 영국국민 권리법안을 작성하는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내걸고 있다. Id. 덧붙여 노동당 정권은 블레어(1997년 5월-2007년 6월) 및 브라운(~2010년 5월) 내각이었지만, 그 후 카메론 내각(2010년 5월~2015년 5월 보수·자유민주 연합. 현재 보수당)으로 바뀌었다.

35) 법안은 내무장관 메이(Theresa May)에 의해 2011년 2월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012년 5월 1일 의회 통과 후 재가를 받았다. Protection of Freedom Act 2012(c.9), Part 2, Chapter 1, ss.29-36 Commissioner 장관 임명. 커미셔너는 업무집행의 사무소를 가지고, 지출경비, 수당 등은 국무장관이 결정하여 지불한다. 커미셔너의 직무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사무진, 관계시설도 동 장관이 커미셔너와 협의하여 제공한다. 법에는 자동차 번호판 자동판독도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Ibid., s.34

36) Home Office circular 11/2013. http://parliamentaryyearbook.co.uk/CP/the_ssurveillance-camera-commissioer.html. 정확하게는 감시카메라(CCTV) 및 예비 자동차 번호판 인지장치(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ANPR)의 실무규범이다.

실무규범은 공공장소의 감시카메라 시스템이 공중을 첩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의 신뢰를 공중에게 보증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감시카메라 시스템의 필요성 및 비례성에 관계하는 법률상의 제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에 덧붙여, 실무규범은 동시스템 조작자(운영자) 측에 막대한 투명성 및 동의에 의한 감시 풍조를 촉진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이 감시카메라 시스템이 필요할 때, 감시카메라의 한층 더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한다고 생각한다. 이 실무규범에 나타난 접근법은 대부분은 자율규제에 의한 것이지만 대부분은 본 규범이 처음부터 법적인 결속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스템 조작자가 본 규범에 규정된 준수사항(컴플라이언스)에 편리성이 있다고 인정하듯이 본 규범이 자주성을 기초로 하여 광범위하게 지지되고 채택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와 같이, 실무규범은 그 대상자를 공적인 기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사업자), 개인까지 넓혀서 자주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준칙이라 할 수 있다. 실무규범은 좋은 실무운용이 되는 후술의 12개 항목의 지도원리(Guiding Principle)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다른 법률준수의 요청항목과 다음의 자유보호법에 의해 제시된 항목으로 구성된다.³⁷⁾

<실무규범>

감시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는 감시카메라라고 총칭하나, 원문에서는 “CCTV(폐회로형 텔레비전) 및 기타 감시카메라 테크놀로지”의 규제라고 되어 있다(조문 제1장, 항목 표제). 확대된 모든 감시카메라 설치·운용자(사업자)에 대한 행위 준수규범으로서 의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규범의 작성권한은 담당 국무대신(내무대신)에게 있으며, 거기에 감시카메라 시스템의 가이드스를 포함하여 기재된다(자유보호법 제29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실무규범에 의하면 감시카메라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용된다면, 이들 시스템은 공중의 안심·안전, 나아가 사람 및 재산 쌍방을 보호하는 데 공헌할 가치 있는 도구이다’로 한다.³⁸⁾

37) 기존의 법이란, 오로지 공적 기관에 관계하는, 1988년 데이터 보호법(개인정보의 보유), 1988년 인권법(공공기관의 엄수의무), 2000년 조사권한규제법(권리보호) 등을 의미한다. Ibid.

38) ‘동 규범의 목적은 여러 개인 및 광범위한 지역사회가, 스스로를 정찰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호·지원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가 배치되는 것에 신뢰를 가지는 것을 보장하게 되는 것으로 한다.’ Ibid.

실무규범에는 감시카메라 시스템의 개발·사용(동 제1항 a)이나 동 시스템에 의해 얻은 화상 또는 기타 정보의 사용 또는 가공(동 제1항 b)에 관한 가이드스가 포함되게 되어 있다. 전술한 지도원리의 12개 항목이란, 감시카메라 시스템 사용, 운용 시에 채용, 준수되어야 할 조작준칙이다.

<실무규범 12개 항목>

12개 항목을 기본적인 사항(아라비아 숫자) 및 체크 항목(·)으로 나타낸다.³⁹⁾

1. 감시카메라 시스템의 사용은 항상 적법 목적을 수행하고 확인된 절박한 필요성에 맞는 필수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일 것

- 어떤 카메라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 그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가?

2. CCTV 시스템의 사용은 그 정당성의 유지를 확증하기 위해 개인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⁴⁰⁾의 영향을 고려할 것

- 당신은 사생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했는가?
-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를 공표하였는가?

3. 정보 및 신청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공표된 접촉 장소를 포함하여 가능한 많은 투명성을 유지할 것

-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장소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까?
- 질문을 하거나 불만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 접촉해 공표할 장소가 있는가?

39) PFC 2012, supra note 8,s.29(3)., Home Office, 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 June 2013, at 10-11., 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 Code of Practice: A guide to the 12 principles. 자유보호법 제29조 제3항은 실무규범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9개를 나타내고 있어 항간에 나와 있는 12개 항목과는 다른 점이 있다. 동 9개 항목이란 ① 감시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려사항, ② 시스템 또는 장치(이하 시스템 등)의 형식, ③ 시스템 등의 기술 수준, ④ 시스템 등의 소재 위치, ⑤ 시스템 등의 정보 공표, ⑥ 시스템 등의 사용·보수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제 기준, ⑦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를 사용·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제 기준, ⑧ 그렇게 입수한 정보의 접근 또는 개시, ⑨ 불복신청 또는 상담의 제반 절차이다. The former (PFC 2012), Ibid.

40) CCTV에 의해 침해되는 이익을 프라이버시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와 책무(Accountability)와의 관계이며, ‘개인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의 결정권을 갖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책무 시스템이 본질적인 구성요소’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다. Deborah G. Johnson and Kent A. Wayland, “Surveillance and Transparency as sociotechnical systems of accountability,” in: K.D. Haggerty and Minas Samatas (Eds.), Surveillance and Democracy, Routledge-Cavendish 2010, at 21.

4. 수집, 보유, 사용되는 영상 및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감시활동에 대한 책무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를 가질 것

- 당신의 시스템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 당신의 직원은 자기의 책임을 자각하고 있는가?

5. 감시카메라 시스템의 사용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칙, 정책, 절차(이하, 규칙 등)를 준수할 것, 또한 규칙 등을 이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모두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한다.

- 적절한 정책 방침과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당신의 직원은 당신의 정책, 정책 및 절차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6. 엄밀하게 요청된 것보다 더 많은 이미지와 정보를 입수해서는 안 된다.

- 영상 및 정보를 어느 정도 기간 보관할 것인가?
- 일단 영상과 정보가 불필요해지면 그것들이 제거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7. 접속할 수 있는 자에 관해 명확한 규칙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나 정보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할 것

- 집적 정상에 접근하는 (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어떠한 정책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 정보개시에 관한 정책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8. CCTV 시스템 조작자(오퍼레이터)는 어떠한 인정된 운용상 기술적인 능력 기준이라도 그 기준에 적합하고 견지시키기 위해 목적 및 작업과 관련된 그 기준을 검증할 것

- 인증(공인)된, 어떠한 조작 기술 기준에 따르고 있는가?

9. CCTV 시스템의 이미지 및 정보는 무허가 접근 및 운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적절한 보안조치에 따라야 할 것

- 당신의 시스템에 의해 포착된 영상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영상에의 접근을 할 수 있는가?

10. 준수되어야 할 법적 조건, 정책 과제, 규준을 확실히 하기 위해 효율적인 심사나 특별한 방법(방법)을 실시할 것

- 당신의 시스템이 여전히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증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 점검을 하고 있는가?

- 감시카메라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해결이 있을 수 있는가?

11. 적법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증거상의 가치를 지닌 이미지 및 정보를 (얻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의 안전과 법집행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

- 형사사법 시스템은 당신의 폐쇄회로(CC)TV 시스템에서 생긴 영상과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가?

- 당신은 데이터 보관, 안전성, 폐기에 관한 정책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12. 어떠한 정보거든 감시카메라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날짜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고 유지될 것

- 자동차 번호판 인지 장치, 안면 인지, 복장 인지 비디오(Body Worn Video : BWV), 원격조작 물체(드론)와 같은 어떤 특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가?

- 당신의 데이터 보관물(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임을 보증하는 적절한 정책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구 전국(잠정) 감시카메라 감독관에서 커미셔너>41)

자유보호법은 그 법안 단계로부터, 몇 가지 점에서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시민단체인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감시(Big Brother Watch)”로부터의 것이며,42) 이 단체는 공적 기관에 감시카메라 설치의 경우에는 그 설치, 운용의 5개 항목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43)

41) PFC 2012, supra note 45, s. 35. SCC (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에 대한 접속에 대하여는 이하. www.gov.uk/governments/organization/surveillance-camera-commissioner를 참조

42) 이 조직은 감시권력의 극적인 확대를 주시하는 등 시민적 자유의 침식상황을 공표하는 리포트를 간행하는 등 해 오고 있다. 2009년 설립의 시민단체이며, 본 리포트의 간간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조사 신탁의 도움을 받는 등 하고 있다. www.bigbrotherwatch.org.uk

43) 첫째, 실무규범의 실시강화 권한을 감시카메라 감독관에게 부여할 것, 둘째, 공적 기금으로 설치되는 감시카메라의 운용개시에 있어서는, 범죄통계에 언급하거나 혹은 의미를 가진 위해 리스크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셋째, 공공단체는 감시카메라가 범행에서의 유죄를 확정하는데 사용될 때는 그 사례를 공표될 것, 넷째, 공공단체는 그 감시카메라가 범행에서의 유죄를 확정하는데 사용될 것(공표할 것)될 것, 개인 감시구역에 대해 공개될 것(공표 될 것),

이것은 감시카메라의 설치 확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009년에는 내무부는 전국적인 감시카메라 감독조직을 새롭게 설치할 전망으로, 내무부에서는 독립고문으로서 활동하는 “잠정 감시카메라 감독관”을 임명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감시카메라 감독관이라고 떠들썩하게 알려진 것이다.⁴⁴⁾ 자유보호법에 따라 설치, 발전된 커미셔너의 직무는 ① 감시카메라 규범의 준수 촉진, ② 동 규범의 운용심사, ③ 동 규범에 관한 위반 및 개정을 포함한 조언제공을 정부에 할 수 있게 되었다.⁴⁵⁾

커미셔너는 정기적으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원칙 3월말까지의 연차별로 동 보고서(리포트)를 국무대신 및 의회에 제출하여 간행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35조 1b).⁴⁶⁾

그 사례를 공표되어야 할 것, 그리고 개인 감시카메라 설치될 것)에 대해 공개될 것(공공단체는 그 감시카메라 설치될 것). Big Brother Watch, *The Price of Privacy: How local authorities spent £515 m on CCTV in four years*, A Big Brother Watch Report, February 2012, pp.36, at 4.

44) 감독조직(전국 감시카메라 전략국 National CCTV Strategy Board)은, 하부조직으로서 동감독관·독립 자문 그룹을 두었다. 동 그룹은, 기업, 감시카메라 조작자, 지역, 제3섹터 그룹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Frankie Cordova, *World's First CCTV Regulator appointed*, BLOG, 02 Feb. 2010. 내무차관(Home Office minister) 브로큰셔(James Brokenshire)는 감시카메라(및 차량번호는 확실한 Office minister)의 통제를 위해 한층 더 확실한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브로큰셔(James Brokenshire)는 감시카메라(차량번호는 감시카메라(차량번호와 같이 하였다. Alan Travis, “Big brother traffic cameras must be regulated, orders home secretary,” *The Guardian*, 4 July 2010.

45) 내무부(Home Office)는 2014년 2월 (CCTV) 커미셔너가 포터(Tony Porter)로 교체된 사실을 보도했다. www.react-asd.co.uk/housing/know-new-surveillance-camera-commissioner. 커미셔너 교대로 인해 직무의 일부가 변화하고 있다. ① CCTV 실무규범의 이행 촉진은 같지만, ② CCTV 시스템의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조화로운 투명성 있는 운용에 관한 조언을 할 것, ③ 조작·기술기준에 관한 조언을 할 것, ④ 실무규범의 운용방법을 검토하여 어떠한 수정도 필요할 경우 정부에 조언을 할 것이다. Id.

46) SCC, *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 Annual Report 2013 / 14*, Dec. 2014, pp.30. <https://www.gov.uk/government/news/surveillance-camera-commissioner-launches-survey> 1 June 2015. 연차보고서는 자유보호법의 실무규범이 CCTV 감시카메라(자동번호 관독기, 기타 감시카메라)의 공공공간에서의 사용이 설치목적에 합치하여 ‘공개성, 비례성(균형성), 효율성’을 유지하고 법적 의무로서 ‘감시카메라 시스템의 필요성 및 비례성’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앞으로의 과제로서 가정환경에서의 감시카메라 시스템의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환경에서의 감시카메라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하여 그 외 드론(무인비행기 UAV)에 대한 관심 및 자동만면인증장치(AFR)의 활용 확대를 지적하나, 설치 당사자의 실무규범의 자주적 채용이 기본이므로 현황 확인 보고서에 그치고 있음. Ibid., at 9, 18.

3. CCTV 사용상의 과제 및 문제점

감시카메라의 설치, 운용에 관한 정부(내무부)의 초기평가는 정부조사보고서에 실려 있다.⁴⁷⁾ 이 리포트의 저자는 ‘CCTV는 범죄와의 투쟁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CCTV 시스템은 현재의 이 시스템 자체처럼 크게 변동적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⁴⁸⁾ 이 조사는 시티센터, 주차장, 병원, 주택지(거주지역) 등에 설치된 CCTV 13기에 의해 경찰 인지범죄수, 시민의 행동양태(12구역), 카메라기기 조작실과 외부기 관련(경찰), 휴대용 카메라의 경제적 영향 등 다방면에 걸친 조사였다.

CCTV 설치가 있음에 따른 방문지 회피라는 행동 변용을 초래한 것은 응답자의 1%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또한 CCTV 설치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70% 이상이었다는 점, 시민적 자유에 대한 우려는 CCTV 도입 후 불과 2~7% 감소했지만, 응답자의 17%가 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⁴⁹⁾ 대체로 CCTV가 범죄감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거나 CCTV의 설치에 기인하지 않고 범 죄감소가 있었다고 하여 CCTV의 효과 없음으로 단순화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

47) Martin Gill and Angela Spriggs, *Assessing the impact of CCTV*, Home Office Research Study (HORS) 292, February 2005, pp. x iv 160. 본 보고서는 영국의 감시카메라 도입과 운영의 배경을 설명한다. 감시카메라 구상은 1998년 내무부 범죄억제 계획(Home Office Crime Reduction Programme)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에 관한 것이다. 동 구상의 예산은 684 감시카메라 프로젝트의 설치기금으로서 1,700만 파운드였다. ‘시의 카메라’ 설치장소는 광역에 걸쳐 있었다. 구상 제2순위의 352 감시 프로젝트에서 추출된 13 프로젝트의 경과, 효과의 평가·주결론을 제시한 것이다. Ibid., at 1. 본문 주 50, 강하(江下), 전개서 주 2), 137면 참조.

48) CCTV 운용 프로그램장 크리스 커쇼(Chris Kershaw)는 조사결과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Chris Kershaw는 도움이 되는 단적인 한 수단일 수 있지만 현실성 있는 사례라고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Chris Kershaw, Foreword, in: Gill & Spriggs, Ibid., at i. 리포트는 감시카메라 시스템은 과학기술이 한층 더 급속한 진보를 이루는 것임을 유보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제출된 증거(evidence)에 근거하여 평가하면, 성공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Ibid, 120. 다른 조사연구에서 골드는 “감시와 사회적 통제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우리의 중심적인 가정 조건 중 몇 가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감시카메라의 확산은 경찰 등 여러 기관에 감시기술(테크놀로지)이 현실에 미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감시 및 감시의 역할에 ‘근본적 변화’를 (타운센터에서의 경찰활동, 정보수집에 그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Benjamin J. Goold, “CCTV and Policing: Public Area Surveillance and Police Practices in Britain,” Oxford U.P. 2004, at 212-213.

49) Gill and Spriggs, supra note 53, at v-x. 대상 12구역 (9 주택지 및 3 시티 타운 센터) 설치 전후의 비교 대상 연구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단 CCTV가 설치되면, 시민들은 발생 사안에 대해 경찰에 더 많이 신고하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응답자의 1/3에 해당한다). I bid., at viii, x.

다.⁵⁰⁾

어쨌든 영국은 공적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까지 과급된 감시카메라의 사용, 운용을 법률상의 실무 규범으로서 높여 입법화했지만, (형사·민사의) 법적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형태로,⁵¹⁾ 지도원리를 12개 항목으로서 규정해서, 준수를 지도하는 완만한 규제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감시카메라의 설치주체에 관계하는 법률은 실시 관계당사자(당국자)에 의해,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라면 관계되는 형사절차법, 인권법과 관계되어 생김으로써 감시카메라의 사용, 운용방법에 결박이 걸린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⁵²⁾ 이 포괄적인 실무규범은 민간·개인 간에 있어서의 감시카메라의 사용, 운용을 포괄한 데에 특징이 있고, 또 규정내용에 추상도가 남는다. 이 자유보호법의 한 영역으로서 감시카메라의 실무규범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에 버밍엄시의 상황을 전형으로 비대한 감시카메라 망과 시민적 자유와의 영국적 타협점(일입법)을 간취할 수 있지만, 그 실효성, 보장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과제가 남아 있다.

IV.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과학기술 - 감시와 사회연대

감시카메라 문제를 생각할 경우 범죄에의 불안, 안심감, 체감 치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시민의 범죄 의식, 범죄대책 의향(이하, 시민의식)이 감시카메라 설치에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여론 조사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시민의식의 분석과 대응의 본연의 자세가 범죄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운용의 본연의 자세, 방향에 시사를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1. 치안에 관한 여론조사

여론조사에 의해, 체감 치안, 시민의식을 일정 정도 알 수 있다. 일본은 ‘치안

50) Ibid., ch.6,at x,115.

51) PFC 2012, supra note 45, s.33(2).

52) Ibid., ss.33(4)-(5).

에 관한 국민의 의식 조사'의 여론조사는 전화·전전화(2004년, 2006년) 조사와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안전·안심하는 국가인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그렇다'가 42.4%(2004년), 46.1%(2006년), 59.7%(2012년)로 추이하며, 다른 한편이 부정하는 '그렇지 않다'는 같은 기간 54.7%, 52.5%, 39.4%로, 응답자의 60%가 안심·안전감을 나타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의 치안에 관한 인식'에서는 '좋아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1할 5푼 정도 있지만, '나빠졌다고 생각한다'가 여전히 8할을 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81.8%). 또, 범죄와 조우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상위 4개 항목에서는 변화가(53.7%), 노상(53.6%), 인터넷 공간(41.9%), 공원(36.6%)으로 되어 있다.⁵³⁾ 여기에서 개관할 수 있는 것은 국가 레벨의 안전·안심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반 가까이가 긍정하지만, 최근의 치안상황의 악화(80%) 및 범죄조우 불안은 장소로서 변화가·노상을 반수 이상이 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의 변화가·노상 감시카메라 설치의 배경 요인은 이들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사회의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는 시민의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은 범죄발생에 대한 대응보다, 범죄발생의 미연방지, 바꾸어 말하면, 범죄발생의 리스크 저감화, 미연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감시카메라를 선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사회는 범죄발생의 리스크 사회로서, 범죄의 발생에 이르는 모든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방지하려는 것이다.

2. 현대사회, 개인, 감시로 대체하는 사회연대의 가능성

이 상황은 현대(후기자본주의) 사회가 종래의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던 범죄방

53) 내각부(정부홍보실), "치안에 관한 특별 여론조사의 개요," 2012 (2012년 8월 16일).

<http://survey.gov-online.go.jp/tokubetu/tindex-all.html> 최근의 치안항목에서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회답자가, 동기 7.1%, 11.3%, 15.8%인 반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6.6%, 84.1%, 81.1%(1587명)로 감소했다. 이중 치안악화의 원인은 '지역사회의 연대의식이 희박해진 것'(54.9%), '경기악화'(47.4%), '범죄정보의 용이성 입수'(44.7%), '청소년 교육의 불충분함'(43.8%), '국민의 규범의식 저하'(42.8%)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방문 외국인에 의한 범죄증가에 대해서는 (28.2%), 국내 방문외국인의 부족함(43.8%), 국민의 규범의식 저하(42.8%)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방문 외국인에 의한 범죄증가에 대해서는 (2006) 2%로 나타났다. 경찰 단속의 불충분은 제자리걸음(18.8%, 18.1%, 17.3%)이었다. 또한 2012년 여론조사는 1,956명(유효 회수, 동률 65.2%)의 조사원의 개별면접 청취에 의한(기간 7월 5일~8월 15일, 대상자 3,000명). 동 1-6면.

지의 혈연적·지연적 관계나 공동체적 관계,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유지된 세이프티 넷을 가지지 않고 유효하게 기능시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부터, 그 대체적 기능을 감시카메라(시스템)에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현대사회를 리퀴드 모더니티(유체적인 근대, 후기 자본주의)로서 표현하는 Z. 바우만(Bauman), D. 라이언(Lyon)등의 연구자가 있다.⁵⁴⁾

오늘날에는 복지사회라 불리던 행정 비대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적인 보호·구제의 시책에서 축소국가에 의한 복지 재검토, 자력구제의 촉진·조장에 의해서 사회의 개인간의 연대성, 상호부조성은 해체되는 가운데 상호불신적인 사회연대성을 공유할 수 없는 시민의 집단사회로 변질화하려고 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낮선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의도에 의해 움직이는 것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가 가질 않는다. 낮선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조립하는 방정식 안의 미지의 변수이다.’ 결국 낮선 사람들은 이질적인 존재이다. 즉, 불가해하고 곤혹스러운 존재이며, 그 의도나 반응은 여느(일반적인, 낯익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낮선 사람들이 공격적이지 않아도 표면상 화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불쾌한 씨앗이다. 즉, 그들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가 행하는 행동의 결과나 성공의 기회의 예측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작업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⁵⁵⁾

보안대책의 도입과 확립, 활용, 강화에 의해 만들어지고 테워진 열은 공포심이나 불안과 긴장감을 재발시키고 증대시키고 번식시키는데 필요한 유일한 기동력이 된다. 안전을 위해 설계되고 획득되어 기동된 전략과 아이디어는 아무리 근본적인 것이라도 불안을 완화시킬 만큼 근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계속되지 않는다.⁵⁶⁾ 미카미 타카시는 이 개인·분단화된 사회에 사는 시민의 불신 위에 선 감시 사회에 대해, 그 필연적인 상황 현상을 밝히고 있다.⁵⁷⁾ 리스크

54) 지그문트 바우만(森田典正 옮김), 리퀴드 모더니티: 액상화하는 사회(大月書店, 2001년), 4면. 포스트모던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와해, 집단행동의 붕괴, 인간적 유대에 네트워크 붕괴 경향의 사회, 19-20면. 지그문트 바우만 (이토 나리역)·콜라터럴 데미지 (청토사, 2011년). 리퀴드 모던(유체적인 근대, 후기자본주의)은 솔리드 모던(근대, 자본주의)의 대개념이다. David Lyon, “The Electronic Eye: The Rise of Surveillance Society,” U of Minnesota Press 1994, pp.270; David Lyon, Surveillance Studies : An Overview, Polity Press 2007, pp.243.

55) 바우만 (伊藤成), 콜라터럴 데미지 (전게서), 102면.

56) Id. 101면

사회는 단순한 인과관계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감시를 필요로 한다. 또, 개인의 가치관이나 환성이 다양화한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내면을 추측하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인간에게 규범을 집어넣어 정신을 이식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개별적 행동을 계속 모니터링함으로써 이탈을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된다. 동시에 개인화된 리스크 앞에서 불안을 안고 있는 개인들은 스스로 알아서 감시에 몸을 맡기고 상호 감시적으로 위험회피를 하려고 한다. 물론, 이런 유형의 감시는 자기보존과 사생활 추구의 역설적인 결과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그 기반에는 사회적 불평등이 따른다.

감시사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켜야 할 많은 것을 가지고, 감시 장치에 액세스할 기회와 재력이 풍부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후기 근대(자본주의)사회에서 아오기 타케히코가 공공장소에서 용모·용모를 드러내는 목시적 동의를 연장선상에서 감시카메라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제한이 수인의 한도 내로 하는 것은 공중의 장에서도 초상권 등이 보관되는 프라이버시(개인의 기본권)가 있는 것을 경시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견지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⁵⁷⁾

문제점으로서 프라이버시보다 공공 공간을 절대화해 버릴 위험이 있다. 오히려, 공공공간이 프라이버시를 우월하다고 했을 경우에도 질이 다른 각각 원칙과 정도의 명확화, 공공의 상대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위해 프라이버시의 허용성·한도, 공공성의 이름으로 강제당하는 감시카메라 설치·행사의 목적, 수단(행위 양태) 균형 침해에의 구제 등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 연대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감시카메라에 의한 보호를 넘는 형태로 제기되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해체된 개인으로부터, 연대적인 사회의 재생이 가능한 가는 과제이다.

57) 三上剛史는 현대 사회가 잠재적 요인(범죄자)으로부터 방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감시카메라로의 상호 감시에 의해서 안전·안심인 사회를 확인하려고 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대략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전부 밝혀내고, 위험인자를 미리 제거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감시카메라라 건강검진은 그 전형이지만, 감시카메라라고 부르기보다는 방범 카메라라고 부르고, 모니터라고 부른다. 건강검진은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진찰한다. 즉,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즐겨 감시당하는 것이며, 또 서로 감시함으로써 안전·안심사회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三上剛史, 사회의 사고-리스크와 감시와 개인화, (학문사, 2010년), 71-72면.

58) 아오기 다케히코(青柳武彦), 사이버 감시 사회 - 유비쿼터스 시대의 프라이버시론, (전기통신진흥회, 2006년), 320면.

일찍이 뒤르켐이 분업사회에 있어서의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이것에 대응한 유기적인 (사회) 연대를 지지하는 규범이 미성숙하고, 사회가 무규범(아노미)에 있는 것을 나타냈지만, 현대 사회는 개인이 새로운 연대를 스스로 손에 넣을 때, 감시카메라에 의한 불신은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⁵⁹⁾

V. 결 론

영국에서 본 것처럼 유비쿼터스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수집과 관리사회의 추이를 배경으로 하여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감시카메라 시스템이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영국에서는 모델 감시카메라 준칙(실무규범)이라고 해야 할 것이 감시카메라의 범람, 증식 속에서 제기되어 주변 시민의 인권 관련법의 정비 추이 속에서 성립되어 왔다. 한편,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감시카메라는 경찰 주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 개인설치 350만 모두, 약 500만기로 여겨지는 ‘방범카메라’의 설치 상황에 있지만, ‘실종사건예방 등 방범카메라’사회가 출현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공공시설에서의 감시카메라의 수요확대가 전망되어 감시카메라의 제품화나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⁶⁰⁾

테러와 범죄예방 대책을 이유로,⁶¹⁾ 더욱이 설치, 운용, 그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그 한편, 동 카메라에 의해서 얻을 수 있던 현 단계에서는 해상도가 낮은 영상에 의해서 오인 체포마저 일어나고 있다.⁶²⁾

59) 뒤르켐, 자살론 (중공문고, 1997년 10판), 478면. Anthony Giddens (Ed.) Introduction, in: Emile Durkheim, Selected Writings, Cambridge. 기든스는 뒤르켐이 사회노동분업론에서 ‘유기적인 연대는 분화된(=Differential) 노동의 분업 내부에서의 직업상의 상호의존에 유래하는 여러 개인 및 개인으로 이루어진 여러 집단과의 사이의 협동연대에 있다’라고 함과 동시에 유기적인 연대는 진행된 조직과 유사한 발달한 사회 조직인 모던한 사회질서의 본질적 기반이다. Ibid., at 8, 10, 123, 141. E. 뒤르켐 (井伊玄太郎 옮김), 사회분업론 (전2권, 고단샤, 1989년), 상권 310면, 하권 257면 참조.

60) 種子房子, ‘감시카메라 제품화 가속,’ 毎日新聞, 2015년 3월 3일.

61) 도시방재 연구센터·테러 대책을 위한 민간 카메라의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2010년, 11면. 도민의 안전·안심 확보를 위해 각종(거리, 버스·택시) 카메라에 의한 ‘비상시 영상전송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여 민관일체가 된 테러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서 그 도입, 운용을 설명한다. 10면.

62) NHK, ‘증식하는 감시카메라,’ 클로즈업 현대, 제2954호 (2010년 10월 25일)는 300만기에 이르

감시카메라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 컨트롤권, 초상권이 ‘공공의 복지’ 등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조례에 맡기는 것보다 법률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국과 같이 실무규범에 의한 틀 설정도 하나의 사고 방식이지만, 그 때에도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해야 한다. 전국의 감시카메라 설치, 운용에 관한 통괄기관은 의회 커미셔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처럼, 제3자 행정감시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감시카메라 시스템이 행정에 의해서 범집행의 형태를 취한다면, 감시카메라 시스템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 책임을 지는 의회 커미셔너에 의한 체크 시스템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감시(카메라 시스템)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명시되어 둘 필요가 있을가의 물음에 대해, 컨트롤(통제)이 사회적 규제에 필요 불가결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 같은 취지이며 지당하다.⁶³⁾ 감시카메라의 설치 확대는 범죄에의 불안, 테러의 공포 등에 의해서 촉진되고 있어 확대의 일로를 걷고 있다. 향후, 테러와 실종사건예방 대책과의 관련해서 감시카메라의 설치, 기능의 활용이 주장되어질 것 같다. 일본경찰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작성된 보고서는 그 전형이다.⁶⁴⁾ 이러한 감시카메라의 사용이 확대되는 것은 과거 전쟁기에

는 상가, 주택가에서 설치되는 자치체로부터의 조성금 지출, 범죄수사로의 이용의 면과, 카메라 설치, 운용의 규칙의 애매함, 방법목적 외에서의 사용, 트러블의 상황 및 영독의 설정, 대책을 다루고 있다. www.nhk.org.jp/kiroku/detail_2954. NHK, ‘방법카메라의 함정-잇따른 오인 체포,’ 클로즈업 현대, 제3564호 (2014년 10월 14일)는 5년 후 카메라 명칭이 감시에서 방법 카메라로 변화하지만, 500만기에 달한 가운데서의 경찰의 오인 체포, 강도 사건 후의 용의자(피고인)의 무죄 사례를 들어, 출연자 諸澤英道는 고성능 영상의 가공 가능성을 지적한다. www.nhk.org.jp/kiroku/detail02_3564.html.

63) Torin Monahan, “Surveillance as Governance: Social inequality and the pursuit of democratic surveillance,” in: Kevin D. Haggerty & Minas Samatas (Eds.), *Surveillance and Democracy*, Routledge-Cavendish 2010, at 101.

64) 도시방법연구센터의 “테러대책을 향한 민간 카메라의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동 센터, 2009년). 이 조사연구는 경시청이 계획하는 민간설치의 카메라 영상을 활용하여, ‘3차원 얼굴형상 데이터베이스 자동 대조 시스템’과 ‘비상시 영상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효과적 운용 방법과 적정 활용의 대책을 제언하는 데 있었다. 결론적으로, 많은 도쿄도민이 ‘대중교통 기관 등에 있어서의 테러 불안’을 안고, ‘카메라 활용에 있어서의 대책 강화’를 바라고 있다고 한 후에, 전술한 전송 시스템이 도민의 안전·안심 확보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자. 이 시스템 때문에, 적절한 운용·명확한 기준 설정, 또 운용상의 문제점 검증에 의한 효과적인 시스템 운용의 개량이 기대된다고 하자. 키노시타 토모시(木下智史)는 “테러대책은 그 규제대상을 앞당겨 가는 결과, 범죄행위에 대한 혐의가 불명확한 단계(따라서 재판관에 의한 영장발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단계)에서의 체포·수색이나, 혐의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비밀수사가 테러 대책

있어서 여러 수단사용의 윤리적인 타당성 문제와도 공통되게 이어진다는 지적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⁵⁾ 이 공적 기관에 이르는 감시카메라 설치의 브레이크 없는 확대를, 그 일이 가지는 경제적 코스트 문제를 포함해,⁶⁶⁾ 신중하게 판별해 갈 필요가 강해지고 있다.

사회 내부의 구성원 개인간의 불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 시스템의 비용은 방법 이점인 증거로써는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극한에 이르기 전에, 새로운 사회내의 유기적인 연대책을 모색해 해결(솔루션)을 찾아낼 때를 맞이하고 있다.⁶⁷⁾

의 이름으로 도입됨으로써, 형사수사에 있어서의 대원칙인 영장주의가 큰 폭으로 완화된다”라고 한다. “헌법과 테러 대책 입법,” 법률시보 제78권 제10호(2006년), 6-7면. 이 테러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하는 원인론 없는 감시카메라 등에 의한 개인의 감시가 “테러에 대한 전쟁”으로서 긍정되는 미합중국의 상황은 교훈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비행기 세계 무역센터 충돌 사건을 계기로 한, 부시 대통령의 ‘테러에 대한 전쟁’에 따른 일반적인 감시 강화책 참조. Williams G. Staples, “Everyday Surveillance: Vigilance and Visibility in Postmodern Life,” 2nd ed. 2014 Rowman & Littlefield, pp.255, at xi. 예를 들면, 민간인 “서점에서 실시되는 감시는 기묘하게도 민주적이다. 즉, 모든 사람이 감시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포스트모던의 감시의 특징 중 하나는 조작상, 계통적이고, 조직적, 자동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 게다가 “관찰자(observer)는 거의 보이지 않고, 익명으로, 종종 전혀 개인이 아니며, 오히려 내가 “데이터 스폰지(정보 흡수물)”라고 어떠한 형태라고 부르는 것들로, 그것들은, 즉, 비디오 카메라, 스캐너, 바코드 리더, 약물 테스트 키트, 어떠한 종류의 자동 추적 시스템이며,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전망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일단 디지털 기록되면 영구하다고 한다. Ibid., at 5.

65) Kevin Macnish, “Just surveillance?: Towards a Normative Theory of Surveillance,” *Surveillance & Society* 12(1), at 142. <http://www.surveillance-and-society.org>. 전쟁은 전통적으로 지탱하는 7원리이다, 원인 그 자체, 정당목적, 정통당국(권력), 최후의 수단(필요성), 공식선언, 성공의 합리적 기회, 비례성(균형)에 의하지만, 이 원리는 이번에는 전쟁문제로 대체하여 감시문제에 해당된다고 한다. Ibid., 147-150.

66) 영국 감시카메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참조. 2012년 리포트에 의하면, 영국 국내에 428개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ies)에 적어도 5만 1600기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2007년부터 2011년간의 감시카메라 설치·운용·유지 경비는 5억 1,500만 파운드(대략 1조 42억원)으로, 이것은 경찰관 4,121인분 상당액이었다. 감시카메라 시스템 경비의 톱을 차지한 웨스트 미들랜드에 위치하는 인구 100만 정도의 공업도시(근교를 포함하면 인구는 229만명이며, 제2위.) 636기에 1,429만 3,060파운드(약 278억 7,146만 7,000원)이다. 제2장에서 본 浜田시의 현격한 설치상황을 볼 수 있다. Big Brother Watch, *The Price of Privacy: How local authorities spent £515m on CCTV in four years*, A Big Brother Watch Report, Feb. 2012, at 4, 20. Supra note 17(previous chapter 2). www.bigbrotherwatch.org.uk

67) 가네코 이쿠요(金子郁容), 신판 커뮤니티·솔루션 (岩波書店, 2002년), 참조.

《참 고 문 헌》

1. 일본문헌

三上剛史, “社會の思考—リスクと監視と個人化,” (學文社, 2010年), 71-72頁.

高橋直哉, “防犯カメラに關する一考察,” 法學新報 第112卷 第1・2号(2005年), 81頁.

三上剛史, 사회의 사고-리스크와 감시와 개인화, (학문사, 2010년), 71-72면.

種子房子, ‘감시카메라 제품화 가속,’ 毎日新聞, 2015년 3월 3일.

가네코 이쿠요(金子郁容), 신판 커뮤니티·솔루션 (岩波書店, 2002년), 참조.

뒤르켐, 자살론 (중공문고, 1997년 10판), 478면.

뒤르켐 (井伊玄太郎 옮김), 사회분업론 (전2권, 고단샤, 1989년), 상권 310면, 하권 257면 참조.

마에다 마사히데(前田雅英), “범죄통계로 본 신주쿠 방범카메라의 유효성,” 法學 2003년 제1251호 (2003년), 154면.

말콤 필리(후지이 쓰요시(藤井 剛) 옮김), ‘일본과 서양에서의 범죄 전개에 관한 세 가지 가설,’ 龍谷法學 제41권 제3호 (2008년), 165-183면.

무라이 토시쿠니(村井敏邦), “범죄의 발생이 예측되는 현장에 설치된 텔레비전 카메라에 의한 범죄상황의 촬영녹화가 적법하다고 여겨진 사례,” 판례평론 제360호(1989년), 224면.

미야케 타카유키(三宅孝之), “지역의 안전, 리스크와 범죄자의 사회내 처우,” 아사다·우에다·마츠미야·혼다·김편, “자유와 안전의 형사법학,” (법률문화사, 2014년), 695면.

사쿠마 오사무(佐久間修), ‘유비쿼터스 사회와 형사 실체법,’ 法學 2008년 제1361호 (2008년), 49면.

시라이시 타카시, 오구라 토시마루, 이타가키 류타(白石孝·小倉利丸·板垣龍太) 편, 세계의 프라이버시권 운동과 감시 사회(명석서점, 2003년) 소장, 237면. 내무부 가이드라인 1984년 데이터 보호 커미셔너, 240면.

야오기 다케히코(青柳武彦), 사이버 감시 사회 - 유비쿼터스 시대의 프라이버시론, (전기통신진흥회, 2006년), 320면.

에시타 마사유키(江下雅之), 감시카메라 사회 - 이제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 않

아 (고단샤, 2004년).

NHK, ‘방법카메라의 함정-잇따른 오인 체포,’ 클로즈업 현대, 제3564호 (2014년 10월 14일)

야마구치 히비키(山口響), “감시카메라 대국 영국의 지금,” 코쿠라 토시마루(小倉利丸)편, 노상에 자유를-감시카메라 철저 비판 (임팩트 출판회, 2003년), 82면.

오카모토 미키(岡本美紀), “길거리 방법카메라 시스템의 도입을 둘러싼 여러 문제-일본과 영미에 있어서의 현상의 비교검토,” 법학신보 제112권 제1·2호 (2005년), 597면.

우토 다카시(宇藤崇), “피의자의 외모 등의 비디오 촬영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юри스트 제1376호 (2009년), 208면.

이시무라 코지(石村耕治), 구미의 감시카메라 규제, 237면, 호시 슈이치로(星周一郎), “영미에서의 길거리 방법카메라의 법적 규제,” 전게서·방법카메라와 형사절차(홍문당, 2012년) 소장, 3,84면.

이시무라 코지(石村耕治), “구미의 감시카메라 규제 입법-감시카메라와 시민의 프라이버시,” 시라이시 타카시·오구라 토시마루·이타가키 류타(白石孝·小倉利丸·板垣龍太)편, 세계의 프라이버시권 운동과 감시 사회 (아카시 서점, 2003년), 237면.

지그문트 바우만(森田典正 옮김), 리퀴드 모더니티: 액상화하는 사회(大月書店, 2001년), 전 279+4면. 포스트모던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와해, 집단행동의 붕괴, 인간적 유대에 네트워크 붕괴 경향의 사회, 19-20면.

타미야 유타카(田宮裕), ‘수사에 있어서의 초상권과 그 한계-최고재판소 판례의 의의,’ 판례타임스 제243호(1970년), 14면.

하마이 고이치·세리자와 카즈야(浜井浩一·芹澤一也), “범죄 불안사회,” (코분샤, 2006년), 161-162면.

호시 슈이치로(星周一郎), 방법카메라와 형사절차(홍문당, 2012년), 167면

2. 영국문헌

Alan Travis, “Big brother traffic cameras must be regulated, orders home secretary,” The Guardian, 4 July 2010.

- Anthony Giddens (Ed.) Introduction, in: Emile Durkheim, Selected Writings, Cambridge.
- Benjamin J. Goold, "CCTV and Policing: Public Area Surveillance and Police Practices in Britain," Oxford U.P. 2004, at 212-213.
- Big Brother Watch, Protecting Civil Liberties: The 2015 Big Brother Watch Manifesto, 2015, at 44. Daily Mail, UK, 27th March 2007.
- Big Brother Watch, The Price of Privacy: How local authorities spent £515 m on CCTV in four years, A Big Brother Watch Report, February 2012, pp.36, at 4.
- David Garland, The Culture of Control: Crime and Social Order in Contemporary Society, Oxford U.P. 2001, pp.307.
- David Lyon, "The Electronic Eye: The Rise of Surveillance Society," U of Minnesota Press 1994, pp.270.
- David Lyon, Surveillance Studies : An Overview, Polity Press 2007, pp.243.
- Deborah G. Johnson and Kent A. Wayland, "Surveillance and Transparency as sociotechnical systems of accountability," in: K.D. Haggerty and Minas Samatas (Eds.), Surveillance and Democracy, Routledge-Cavendish 2010, at 21.
- Frankie Cordova, World's First CCTV Regulator appointed, BLOG, 02 Feb. 2010.
- Home Office, 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 June 2013, at 10-11.
- Kevin Macnish, "Just surveillance??: Towards a Normative Theory of Surveillance," Surveillance & Society 12(1), at 142.
- London Council, Code of Practice for Operation of CCTV: Enforcement Cameras in the London Borough of Hammersmith & Fulham, Version 3.3-June 2012, at 3-4.
- Martin Gill and Angela Spriggs, Assessing the impact of CCTV, Home Office Research Study (HORS) 292, February 2005, pp. x iv 160.
- SCC, 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 Annual Report 2013 / 14, Dec. 2014, pp.30.

Torin Monahan, “Surveillance as Governance: Social inequality and the pursuit of democratic surveillance,” in: Kevin D. Haggerty & Minas Samatas (Eds.), *Surveillance and Democracy*, Routledge-Cavendish 2010, at 101.

von Hirsh, Garland, Wakefield, *Ethical And Social Perspectives O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Hart Publishing 2000, pp.230.

Williams G. Staples, “Everyday Surveillance: Vigilance and Visibility in Postmodern Life,” 2nd ed. 2014 Rowman & Littlefield, pp.255, at xi.

[ABSTRACT]

Legal review of surveillance and prevention cameras and prevention of disappearance.

Lee Keon-Su*

This paper points out the phenomenon that modern society is trying to confirm a safe and secure society by mutual monitoring with a surveillance camera named a crime prevention from potential factors (criminals). Anyone must identify all the potential risk factors that can be roughly thought of and remove them in advance. Surveillance cameras or health check-ups are typical, but rather than surveillance cameras, they are called crime prevention cameras such as disappearance prevention, and they are called monitors. Today, regardless of the number of crimes in reality or the number of perceptions, the impression that security is deteriorating due to unusual events is spreading, which promotes the installation of crime cameras such as monitoring and disappearance in streets, stores, houses, and parking lots.

Specifically, in the UK, CCTVs generally followed the accumulated common rules. They are stipulated in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the Human Rights Act 1998, the Regulation of Investigation Rights Act 2000,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And it would be safe to say that the 2012 Freedom Protection Act was newly added. In addition, with respect to road traffic, regulatory legislation on road traffic relations has been added. In the UK, there were no comprehensive regulations on surveillance cameras (systems) by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It is said tha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in 1984, the visualization of surveillance devices such as surveillance cameras used by the police was

* Doctor of Criminology, Professor of Criminology at Baekseok University.

uniformly promoted. As such, there are prior studies that have been strongly inclined due to legal regulations on the system and operation of crime prevention cameras, such as monitoring and prevention of disappearance in the UK, but they are facing a new phase today. In 2012, Code of Practice was proposed under the Protection of Freedom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ree Protection Act) for proper operation of surveillance cameras, and the new 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 (SCC.) was placed.

As seen in the UK, it was found that the surveillance camera system caused privacy infringement by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gainst the backdrop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management society in ubiquitous society. In the UK, what should be called the model surveillance camera rules (working norms) has been raised amid the flooding and proliferation of surveillance cameras, and has been established amid the trend of reorganization of laws related to human rights of nearby citizens. When asked what needs to be specified to defend democracy in surveillance (camera system), there is an opinion that control (control) is indispensable for social regulation, but it has the same purpose and is correct.

Key Words

surveillance cameras, prevention of disappearance, personal information, portrait rights, privacy, public places